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최호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





연구보고 2019-18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혜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고 영 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 2019-18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7-3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 9천원으로 전체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에 달해, 자녀 양육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육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13년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시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육아 가구에 대한 보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육아가구에 대한 보편 지원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소비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고찰하는 것은 향후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모색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 예정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써,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 및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영유아 가구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초등진학에 따른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2019년도에 크게 확대되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들의 인지와 선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보편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의 격차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향후 육아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및 특히나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응답해주신 신생아 표본 가구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해 수고한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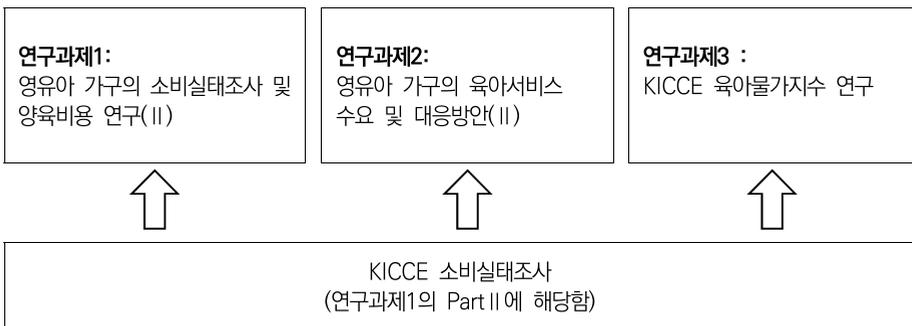




## 일러두기

-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 수행 체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함.
- 본 연구는 총 3개의 연구과제가 각출하여 하나의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를 수행함.
  - 총괄 과제명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로, 아래 3개의 세부 연구 과제로 구성됨.
  -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각 연구에서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실태 관련 설문을 통합하여 조사함.

### [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 2019년 2차년도 연구 기준 ]



□ 총괄 과제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는 2018년 부터 5년 연속으로 실시 예정.

- 세부 연구과제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면, 각 과제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
- 세부 과제의 구성과 세부 과제별 연구 내용 등은 시의성을 반영하여 매해 변경될 수 있음.

□ 각각의 보고서는 세부 과제별로 완결성을 갖도록 구성되지만, 3개 과제가 공유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 관련 내용은 연구과제 1에서 포괄함.

- 연구과제 1은 Part I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부분과 Part II : KICCE 소비실태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연구과제 1의 보고서는 분권하여 2권으로 구성되며, 연구과제2와 연구과제3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4권의 보고서가 한 질로 구성되어 발간됨.

□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각 세부과제별 연구 범위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음.

- 연구과제 1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생활비 지출, 양육 관련 공적 이전 소득 등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요구 등
- 연구과제 2 :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초등 돌봄 이용 실태 및 수요, 육아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
- 연구과제 3 : 체감 물가, 경제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 등
- 따라서,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 결과의 일부는 이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고, 다른 2개의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반대로 일부 동일한 표나 내용이 다수의 보고서에 언급될 수 있음.

□ 연구과제1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소비란 전반적인 소비 행동과 연관된 광의의 의미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지불 행위 혹은 금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지출'로 표기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 28).
- 양육비용이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부담금에 해당하는 '양육비'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용'으로 표기.
-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비용은 총 3가지로
  -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에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모두 포함됨.
  -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제외한 금액.
  - 마지막으로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앞서 두 경우와 달리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 개인 단위로 산출된 금액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자녀별 양육비용을 별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자료가 아닌 아동 단위로 자료를 세로로 변환한 후, 이 비용을 평균한 값임(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 121~122).
- '영유아 가구'라 함은 가구 내 초등 이상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지칭함.
- 본 연구에서 초등1학년 자녀가 막내 자녀인 가구(즉, 영유아가 없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가구를 포괄하여 '육아 가구'라고 표현함.





# 목차

요약 ..... 1

**Part I.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11**

**I. 서론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연구 내용 ..... 17
- 3. 연구 방법 ..... 19
- 4. 양육비용 지원 정책 변화 개관 ..... 22

**II. 2019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35**

-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37
-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45
- 3.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 59
- 4.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62

**III.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의견 및 요구 69**

- 1. 아동수당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71
- 2.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 77
- 3.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 86

**IV.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91**

- 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 93
- 2. 양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97
- 3.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격차와 소득탄력성 ..... 106
- 4. 소결 ..... 109

---

<b>V 결론 및 정책 제언</b>	<b>111</b>
1.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 방향성 .....	113
2.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강화 .....	115
3.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감안한 초등학교령기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121
4. 공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	124
5.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재구조화 .....	126
6.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128
<b>참고문헌</b> .....	<b>131</b>
<b>Abstract</b> .....	<b>135</b>

---



## 표 목차

〈표 Ⅰ-3-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1~2차년도) .....	21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22
〈표 Ⅰ-4-1〉 2018년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	24
〈표 Ⅰ-4-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	24
〈표 Ⅰ-4-3〉 양육 관련 세금 혜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8년 12월 말 기준) ..	26
〈표 Ⅰ-4-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변화 .....	28
〈표 Ⅰ-4-5〉 2019년도 자녀 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8
〈표 Ⅰ-4-6〉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30
〈표 Ⅰ-4-7〉 가정 양육 수당 지원금 .....	31
〈표 Ⅰ-4-8〉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금 .....	32
〈표 Ⅱ-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38
〈표 Ⅱ-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	40
〈표 Ⅱ-1-3〉 총 자녀수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	41
〈표 Ⅱ-1-4〉 맞벌이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42
〈표 Ⅱ-1-5〉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43
〈표 Ⅱ-1-6〉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	44
〈표 Ⅱ-1-7〉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	44
〈표 Ⅱ-2-1〉 비목별 양육비용 변화 .....	45
〈표 Ⅱ-2-2〉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율 .....	46
〈표 Ⅱ-2-3〉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48
〈표 Ⅱ-2-4〉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비율 .....	49
〈표 Ⅱ-2-5〉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	49
〈표 Ⅱ-2-6〉 영유아 양육비용: 식비 변화 .....	50
〈표 Ⅱ-2-7〉 영유아 양육비용: 피복비 변화 .....	51
〈표 Ⅱ-2-8〉 영유아 양육비용: 보건/의료비 변화 .....	52
〈표 Ⅱ-2-9〉 영유아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변화 .....	53
〈표 Ⅱ-2-10〉 영유아 양육비용: 여가 및 문화생활비 변화 .....	54
〈표 Ⅱ-2-11〉 영유아 양육비용: 개인유지비 변화 .....	55
〈표 Ⅱ-2-12〉 영유아 양육비용: (자녀를 위한) 보험비 변화 .....	55

---

〈표 II-2-13〉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변화 .....	56
〈표 II-2-14〉 가구특성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변화 .....	57
〈표 II-2-15〉 영유아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58
〈표 II-3-1〉 가구특성별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	59
〈표 II-3-2〉 비목별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	60
〈표 II-3-3〉 초등 진학 이후 비목별 양육비용 증감 (추적 조사 성공 아동, 2012년생) ..	61
〈표 II-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	62
〈표 II-4-2〉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	63
〈표 II-4-3〉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	64
〈표 II-4-4〉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	65
〈표 II-4-5〉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	66
〈표 III-1-1〉 아동 수당의 활용처: 자녀수별 .....	72
〈표 III-1-2〉 아동 수당의 활용처: 가구소득별 .....	73
〈표 III-1-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특성별 .....	73
〈표 III-1-4〉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	74
〈표 III-1-5〉 세제혜택 수혜여부 및 지원금 수준 인지 여부 .....	76
〈표 III-2-1〉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제도 변경 인지 경로 .....	78
〈표 III-2-2〉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대상 연령 .....	79
〈표 III-2-3〉 가구 소비지출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대상 연령 ..	80
〈표 III-2-4〉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추가 지원 대상 .....	80
〈표 III-2-5〉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금액 .....	81
〈표 III-2-6〉 가구 소비지출별 세법 개정에 따른 중복수혜 폐지 정책에 대한 인지 .....	82
〈표 III-2-7〉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확대-세액공제 중복수혜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 .....	83
〈표 III-2-8〉 가구특성별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 확대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85
〈표 III-3-1〉 향후 확대/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	87
〈표 III-3-2〉 가구특성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1+2순위 .....	88
〈표 III-3-3〉 가구특성별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1+2순위 .....	88
〈표 IV-1-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	94
〈표 IV-1-2〉 가구소득 분위 및 총 자녀수별 총양육비용(평균) .....	95
〈표 IV-1-3〉 가구소득분위 * 총양육비용 분위별 분포 .....	95
〈표 IV-1-4〉 가구소득분위 * 비목별 총양육비용(평균) .....	96
〈표 IV-2-1〉 총 생활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	98
〈표 IV-2-2〉 총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	99

---

---

〈표 IV-2-3〉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0
〈표 IV-2-4〉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1
〈표 IV-2-5〉 영유아 식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2
〈표 IV-2-6〉 영유아 피복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3
〈표 IV-2-7〉 영유아 문화생활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3
〈표 IV-2-8〉 영유아 보건의료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4
〈표 IV-2-9〉 영유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105
〈표 IV-3-1〉 가구소득 계층별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최소자승 추정결과	107
〈표 V-1-1〉 비목별 및 범주별 주요 지원 정책 정리	116

---



## 그림 목차

[그림 I-3-1]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	19
[그림 II-1-1] 가구 생활비 지출 구성비 .....	39
[그림 III-1-1]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	75
[그림 III-2-1]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인지 .....	77
[그림 III-2-2] 아동수당-세제 지원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찬반 사유 .....	84
[그림 III-3-1] 양육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	86
[그림 IV-1-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차이 .....	94
[그림 IV-3-1] 가구소득 계층별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가구소득탄력성 추정결과: 비목별 결과 ..	108

---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수당의 도입 등으로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 소비 지출에 어떠한 파급을 가져왔는지를 고찰해볼 필요성이 높음.
- 1차년도 연구 결과 등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차년도 조사에 접어들면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령기로 진입한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해봄으로써, 육아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총 5차년도 연속 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써, 영유아 및 초등 1학년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수당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식 및 요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함.
- 본 보고서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정책 활용 등을 담고 있는 Part I 과 ‘KICCE 소비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된 Part II로 구성됨.
- Part I에서는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차이를 심층 분석하고, 2019년도 양육비용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전년 대비 변화 상황을 고찰함. 또한, 2019년도에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령기로 진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지출 행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2019년 전후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양육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지와 정책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 연구 방법

-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 육아가구 대상 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함.

## 라. 양육비용 지원 정책 변화 개관

- 육아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2019년도에 특기할만한 정책적 변화는 아동수당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세제 지원의 축소라 볼 수 있음.
  -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도입 당시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을 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됨.
  - 아동 수당의 확대에 따라 기존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만 6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불가하게 개정되었으며,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됨.

## 〈Part 1〉

### 2. 2019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가.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2만 6천원으로 1차년도의 311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상승함.
  - 비목별 생활비 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비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가장 많고, 보험료 12.7%, 교육·보육비용이 12.6%,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8.9%, 교통비 8.7%, 주거·관리비 8.3% 순임.
-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총액을 고려할 때,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70% 이하를 생활비로 지출함.
-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엔젤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지수는 모두 낮아진 것으

로 조사됨.

-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식비와 주거비의 비율이 높아 가구 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엔젤지수와 슈바베 지수가 각각 28.3, 10.7 이었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엔젤지수는 23.7과 7.3이 었음.
- 특기할 점은 엔젤지수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는 점임.

## 나.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양육비용은 다소 늘어나 월 평균 총 양 육비용은 126 만 5천원이었으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2만 6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66만원이었음.
-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모두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임.
- 1차년도와 비교할 때, 2차년도에 총양육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서 36.9%로 증가함.
- 1%포인트 이상 증가한 항목은 식비(외식비포함), 피복비(의류및신발), 휴대 전화비, 통신비이었음.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은 1차와 2차년도 모두 66만원으로 같으나 2차 년도의 구성비가 다소 낮았음.
-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0세와 1세는 53만 7천원 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여 6세의 일인당 양육 비용은 83만원으로 약 1.5배에 달하였음.

## 다.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는 다소 증가함.
- 초등 전환기 자녀(2012년생)의 양육비용 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한 비 목은 교육/보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식비(외식비 포함),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보험, 피복비(의류 및 신발)순이었음.

- 유아기에 있던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양육비용이 큰 변화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 1차년도 원표본이 패널조사로 유지된 초등 전환기 자녀 327명에 한하여 초등 진학 이후 양육비용 증감을 비목별로 살펴본 결과, 증가폭이 뚜렷한 비목은 교육/보육비, 식비, 보험비였음.
- 자녀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여가문화생활비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라.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영유아 부모에게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는 11.3%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0.4%로 급감하였음.
-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증감을 살펴보면 부담이 늘어난 비목은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이전지출 등임.
- 가장 부담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전체 응답자의 48.8%를 차지함.
-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출하는 비목으로는 응답 가구의 25.6%는 교육/보육비, 25%는 금융상품, 17.6%는 원리금 상환, 15.9%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 7.2%는 식비를 선택하였음.

### 3.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의견 및 요구

#### 가. 아동수당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아동 수당을 받은 육아 가구가 아동수당을 주로 활용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식비(29.0%), 교육/보육비(24.1%), 저축 등 금융상품(21.3%) 순이었음.
- 아동수당의 사용처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로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1순위 응답 45.0%, 2순위 응답 13.2%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지원에 따른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정책 인지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었음.
- 그나마 세제 지원 혜택 내용별로는 자녀 기본 공제 지원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 2019년 4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이 가구소득(혹은 재산수준)에 무관하게 만6세(2019년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아) 모든 가구에 대해 지급되도록 변경된 정책 변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4%에 달하였음.
- 2019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만 7세(2019년 기준 2012년생 이후 출생아)까지 확대되는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조사 시점인 5월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69.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음.
-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7세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어떠한 경로로 이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5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이 58.4%,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1%,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음.
- 아동 수당 지원 연령 확대 시 확대 연령은 평균 11.1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아동 수당이 초등학령기 대부분의 시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 수당 지원을 돌봄 취약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37.6%가 차등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차등 지원하게 될 경우 지원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고, 한부모가족(16.2%), 다자녀 가구(11.9%), 조손가족(10.5%) 순이었음.
- 반면, 세법 개정으로 아동 수당을 받는 만6세 이하(2013년 이후 출생아)는 자

너 세액 공제(기본 공제 대상 자녀)를 중복 수혜 할 수 없어진 제도 변화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불과 22.0%에 그쳤음.

- 아동 수당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의 중복 수혜 제도가 폐지된 정책 변화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다.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 중에서 육아 가구들이 양육비용 절감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이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51.2%에 달했음.

□ 향후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원의 확대가 49.5%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음.

-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아이돌보미 지원이 축소되어야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고, 출산 장려금 28.8%, 세제 지원 28.3%, 육아휴직 급여 26.9% 순으로 응답되었음.

## 4.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 가.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 소득 최상위 분위인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9분위 이하 가구들과는 총 양육비용 뿐 아니라 영유아 양육비용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음.

- 총 자녀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 분위별 총양육비용(평균)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도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음.

- 가구소득 분위와 총양육비용 분위기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양육비용도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포착되었음.

## 나. 양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분위회귀분석 결과, 총 생활비 지출에 대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즉,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해당 가구의 총 생활비를 늘린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음.
  - 탄력성의 크기는 높은 분위, 즉 총 생활비가 많은 집단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총 양육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분위 수준별 영향력의 크기는 중위 (50%분위) 수준에서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총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용 지출액이 큰 집단(높은 분위)일수록 자녀수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수준이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총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총 양육비용의 경우와는 달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액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수는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가구소득이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즉 높은 분위에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는 영유아 전체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음.
  - 가구소득에 대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의 정도 역시 분위가 증가할수록 그 탄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양육비용 지출 비목별로 분석결과에서는 식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양육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가구소득탄력성이 지출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면, 보건의료비와 교육보육비 항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수준이 증가할

수록 가구소득탄력성도 증가하는 바, 해당 지출에 대한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음.

#### 다.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격차와 소득탄력성

- 하위10%와 상위10% 표본분석을 제외하고 모두(하위25%, 하위50%, 상위50%, 상위25%) 가구소득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지출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음.
- 가구소득 계층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가구소득탄력성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은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유아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는 가구소득탄력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음.
- 육아 가구의 보편적 비용 지원에 대한 강한 정책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된 정책의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보편적 비용 지원을 확장해 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강화
  - 저소득 육아 가구 기준 상향 조정 필요
  - 자녀 장려금 등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강화
-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감안한 초등학령기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단계적 검토
  -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공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재구조화

-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Part II〉

### 6. KICCE 소비실태조사

#### 가.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조사의 조사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방식의 가구 패널조사 방식과 조사구 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하여 진행됐음.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원표본 전체와 추적조사 실패 시 대체되는 대체표본 가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로 구성된 신규표본 가구 등임.
- 조사 도구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태블릿PC를 이용한 TAPI조사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응답자가 종이 설문으로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이 설문으로 조사를 수행토록 하였음.

#### 나. 설문의 구성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 정책 도입에 따른 인지 등을 새롭게 질문한 것과 초등전환기 아동에 대한 초등돌봄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설문이 대폭 확대된 것임.
- 이 외에 양육관련 공적이전소득과 관련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음.

### 7. KICCE 소비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기존 1차년도 원표본에서 1,243가구를 추적에 성공하였고, 405가구를 이탈 표본에서 대체하였으며, 추가로 254가구를 신규조사하였음.
- 결과적으로 2차년도 전체 표본은 1,902가구임.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498만7천원으로 1차년도 462만9천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은 총 60만5천원이며, 1차년도 35만2천원보다 25만3천원 증가하였음.
-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가구의 전체 자녀는 3,44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차년도 조사 당시 조사 대상은 2,294명, 대체된 대상은 712명, 신규로 조사한 대상은 438명으로 나타났음.
-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생 161명, 2018년생 298명, 2017년생 297명, 2016년생 338명, 2015년생 409명, 2014년생 405명, 2013년생 426명, 2012년생 470명이었음.

# Part I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 I

##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양육비용 지원 정책 변화 개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을 전후한 전면적인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시는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이라는 인식 전환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작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여전히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크게 경감되지 못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약화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면서(보건복지부, 2018b: 241)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보편 지원을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서는 아동수당 지원이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지원 연령도 만7세까지 확대되는 등 육아 가구에 대한 보편적 비용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아동수당 홈페이지<sup>1)</sup>). 반면,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확대에 따라 육아 관련 세제 지원 정책이 변경되는 등(기획재정부, 2019. 7. 25) 2019년도는 육아 가구의 양육 비용에 변동은 가져올 만한 정책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 소비지출에 어떠한 파급을 가져왔는지를 고찰하고, 초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총 양육비용은 115만1천원, (가구당)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 9천원이었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3). 영유아 양육비용이 전체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 달해(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3), 자녀 양육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

1)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5. 13 인출).

299만원이하의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자체도 전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양육비용 중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비용과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30~132),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소외감 등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공공 부조의 방식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모색될 때 보다 실효성 높은 지원 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미경·이정원·최효미 외(2016),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신윤정·김지연(2010), 이삼식·박종서·이소영 외(2015)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만5세 유아들의 양육비용을 조사한 바 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해당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유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는 초등 1학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의 변화 양상을 고찰해보고, 학령기 진입에 따르는 적절한 양육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특히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비추어, 초등학령기 진입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년 연속으로 수행 예정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써,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 및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즉,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18년도 1차년도 조사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와 소비 행태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부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Part I)’와 ‘KICCE 소비실태조사(Part II)’로 구성된다. 즉, 실태조사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육아서비스 관련 문항이나 체감 물가 등에 관한 분석은 다른 2개의 연구과제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가. 2차년도(2019년도)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영유아 및 초등 1학년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수당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식 및 요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초등 1학년 진학으로 인한 양육비용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따르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를 고찰하는 Part I에서는 첫째, 기 구축이 완료된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차이를 심층 분석하고, 둘째 2019년도 양육비용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전년 대비 변화 상황을 고찰하였다. 셋째, 2019년도에 유아기에서 초등 학령기로 진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지출 행태의 변화를 고찰하여,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르는 양육비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넷째, 2019년 전후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양육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지와 정책 선호 등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Part II에 해당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1차년도 구축이 완료된 응답 가구를 추적조사하고, 응답 거절이 발생할 경우 조사구 내에서 표본 대체를 실시하였다. 둘째,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를 각 125명씩 추가 표집하여 0세아 표본을 보완, 신규로 구축하였다<sup>2)</sup>. 셋째, 조

사구가 소멸된 경우 및 조사구 내 더 이상의 대체 표본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조사구를 추가 표집하여 대체 표본을 구축하였다. 넷째, 전반적으로 표본 추적 및 유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마모나 이탈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였다. 다섯째, 3차년도(2020년)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 관리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여, 자료의 안정적 수집 및 구축 계획을 설계하였다.

## 나. 연차별 연구 내용

Part I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의 연차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을 확정하고 기초적인 양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주거비와 공유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인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행태에 관한 심층 분석과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양육비용 변화를 고찰해보았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세계 지원 혜택에 대한 인지 및 선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향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 서비스 연구와 양육비용 연구를 통합수행하여, 교육·보육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4차년도 연구에서는 문화 및 여가생활에서의 격차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마지막 5차년도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한 소비실태 추이를 분석하고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sup>3)</sup>.

---

2) 1차년도 조사에서 2018년생(상반기 출생아)은 127명이 조사되었음.

3) 단, 3차년도 이후의 연구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연도의 연구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주요하고 시급한 주제로 변경될 여지가 있음.

[그림 I-3-1]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소비문화 육아지원 정책 변화 및 인지,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양육비용 설문 개발 -육아용품 및 공유경제, 주거 관련 문항	-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격차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변화,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가계 소비 유형별 지출 행태 -육아서비스 수요 및 교육보육비용	-생애주기별 소비 양태의 변화 -문화 및 여가 생활의 격차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소비실태 추이 분석

주: 1) 연차별 상황에 따라 연구 주제는 변경 가능하며, 부가조사 혹은 추가 표집 등이 필요할 수 있음.

2) 점선은 5개년 공통 연구 내용이며, 음영 부분은 연차별 심층적 연구 주제로 연도별로 변경 가능.

자료: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4, [그림 I-3-1]을 수정 보완함.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 작성과 정부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 제시된 선행연구와 정책은 크게 다루지 않고, 육아 가구의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된 지원 정책(아동수당, 세제 지원) 등에 관한 문헌을 추가적으로 개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 연구인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양육비용의 측정과 조사 등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도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에 이미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 나. 육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총 3개 연구과제의 육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차년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적 조사 결과와 표본 특징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3차년도 연구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한편,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조사 1회<sup>4)</sup>만 실시하되, 2019년도 초등 1학년으로 진입하는 2012년생을 추적 조사하였다. 또한, 로테이션 패널 조사 방식을 응용하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신생아 표본을 각 128가구와 126가구를 신규 구축함으로써, 영유아기 전 연령에 빠진 연령이 없도록 하고 자료의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간략하게 1차년도 표본과 추적 대상 표본의 수를 살펴보면, 원표본 가구는 1,648가구였으며 해당 가구에 속한 영유아의 수는 2,277명이었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79). 이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구를 원표본으로 설정하고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나, 해당 가구 내 모든 영유아(2차년도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 포함)를 조사하도록 조사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본의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띄게 된다. 즉,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를 추적 조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순위 형제자매도 추적 조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2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 기준 총 1,902가구, 아동을 기준 총 2,804명이 조사되었다. 이때 실제로 가구 표본이 추가된 경우는 2018년생 128가구, 2019년생 126가구로 총 254 가구이지만, 1차년도 원표본 가구 내에서 후속 출산 및 대체표본 가구 내 막내자녀 연령 변동 등으로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생 가구 표본은 292가구(37가구 추가 증가), 2019년생 가구 표본은 (34가구 추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ICCE 소비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보고서의 가독성과 연구과제들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Part II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

4)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본조사 1회와 온라인 조사 1회가 실시되었음(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표 I-3-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1~2차년도)

단위 : 가구, 명

막내자녀 연령 기준	1차년도 조사			2차년도 조사		
	목표 표본 가구	1차년도 원표본가구	영유아 표본	목표표본 가구	2차년도 표본가구	아동 표본
2019년생	-	-	-	125	160	161
2018년생	125	127	127	252	292	298
2017년생	250	265	268	265	250	297
2016년생	250	255	294	255	231	338
2015년생	250	256	355	256	244	409
2014년생	250	240	369	240	235	405
2013년생	250	257	403	257	253	426
2012년생	250	248	461	248	237	470
전 체	1,625	1,648	2,277	1,898	1,902	2,804

주: 1) 1차년도 원표본 자녀(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2019년생과 2018년생에 대한 신규 원표본 가구는 각 126가구와 128가구 추가됨.

2) 목표표본 대비 2차년도 표본가구의 수가 저연령에서 많고 고연령에서 적어진 이유는 원표본 가구 내 후속출산 및 대체표본 등으로 인한 막내자녀 연령의 변동에 기인함.

자료: 1)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79, [그림 III-1-1]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

## 다.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1차년도 연구의 경우 5개년에 걸친 조사의 표본 구축 및 조사 설계 등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인 실태를 개관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 조사가 완료된 1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 등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구 특성 중에서 소득 계층에 주목하는 이유는 1차년도 연구에서 양육비용에서 가장 유의미하면서도 중요한 격차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편적 육아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신규 표본 및 대체 표본의 설계와 구축, 정책 방안 마련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부문	개최일자	참석자 수	비고
착수보고	2019. 3. 12	30명	외부 자문, 연구소 원내 외
설문 개발 및 조사 설계	2019. 3. 15	1명	양육비용 및 조사 설계 관련 자문
설문 개발	2019. 3. 29	7명	연구과제(3개) 통합 1차 회의
설문 개발	2019. 4. 10	10명	멘토링(영유아 및 초등 자녀가 있는 원내 직원, 설문 예비조사)
설문 개발 및 조사 설계	2019. 4. 22	13명	연구과제(3개) 통합 2차 회의 및 실사 전문가
설문 검토	2019. 4. 26	2명	공적 이전 소득 및 설문 문항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서면 자문)
보고서 검토	2019. 6. 27	20명	외부 자문, 연구소 원내 외
보고서 및 정책 제언 검토	2019. 11. 6	10명	외부 자문, 연구소 원내 외

주: 연구과제2와 연구과제3에서 별도로 실시한 면담은 제외함.

#### 4. 양육비용 지원 정책 변화 개관

영유아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지원 정책 현황은 1차년도 연구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에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조사 이후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현황을 정리해보았다<sup>5)</sup>. 특히, 2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구 및 초등 1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에 관한 설문 문항이 강화되었으므로, 2차년도의 정책 현황 또한 양육관련 공적 이전 소득 및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2019년도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아동수당의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의 축소<sup>6)</sup>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주로 아동수당, 세제 지원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양육관련 공적 이전 소득을 구성하는 주된 지원 정책인 유아학비 및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5) 다만, 2차년도 조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차년도에는 개략적 실태를 파악한 후, 심층 분석은 3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6) 단, 실질적인 적용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0년에 적용됨.

## 가. 아동수당 지원 정책

아동수당 지원 제도는 2018년도 9월 1일부터 도입되어 적용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8년 9월 제도 도입 당시 지원 대상의 연령은 만6세미만의 아동으로, 월령으로 계산하여 지원한다. 즉,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원 대상으로 한다(아동수당 홈페이지<sup>7)</sup>, 2019. 5. 13 인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전후하여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지점은 지원 대상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아동수당이 모든 가구에 대해 일괄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든 아동에 대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은 아동수당의 도입 이전부터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실제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에는 가구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상위 10%의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 가구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 당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표 I-4-1 참조). 이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혹은 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액을 상한 조정했으며,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2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소득 평가액은 세전 총소득에서 다자녀 공제와 맞벌이 가구 공제액을 등을 제한 금액이며,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 총액에서 지역 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 환산율인 월 1.04%(연 12.48%)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3). 즉, 소득 산정을 위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구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아동수당의 지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7)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5. 13 인출).

〈표 I-4-1〉 2018년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함.			

주: 1)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며, 소득 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1.04%(연 12.48%)임.  
 2) 다자녀 공제액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하며,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의 최대 25%까지 공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b), 아동수당 사업 안내 2018, p.3.

이로 인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실제 지원 비용보다 크다는 논란(뉴시스 보도내용, 2018. 10. 10일자<sup>8)</sup>)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등의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적용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도 도입 1년이 되는 2019년 9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지원 연령을 1세 더 확장할 계획이다(아동수당 홈페이지, 2019. 5. 13 인출).

〈표 I-4-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구분	2018년 9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9월 1일
	도입	보편지급	연령확대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2012년 10월생까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3년 2월생까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2년 10월생까지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없음	없음
지원 금액	아동당 매월 10만원	아동당 매월 10만원	아동당 매월 10만원
특기사항	소득 산정 기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나, 1월부터 소급 적용함.	-

주: 1) 제도 적용 시기로 제시된 날짜 기준으로 대상 연령을 표기함.

2) 2019. 1.1 기준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계산 방식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까지를 지원함.

자료: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5. 13 인출).

8) 뉴시스 보도내용(2018. 10.10일자), 여야 아동수당 '갑론을박'... "행정비용 1626억" vs "터무니없어", (2019. 6. 10 인출).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당 매월 10만원으로,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내 자녀수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에 10만원으로는 양육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원금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원금의 증액보다는 지원 대상의 확대에 보다 방점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세제 지원 정책

한편, 2019년도 아동수당 지원의 확대에 따라 세제 지원 제도가 일부 변동되었으며, 이 항에서는 세제 지원 정책의 변동을 중심으로 양육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양육 관련 세금 혜택은 201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원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고 보편성을 띠는 지원 정책은 자녀 세액 공제 제도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로 구분된다(네이버 포스트 국세청 홍보과, 누리우리, 2019. 5.13 인출<sup>9)</sup>).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세액 공제 기간인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20세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이다(소득세법 제 59조의 2). 지원 금액은 자녀수에 따라 점증되는 방식을 띠고 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60만원이며, 3명이상 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에 자녀당 30만원씩이 증액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소득세법 제 59조의 2). 한편,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산·입양한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첫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 70만원이 지원된다(소득세법 제 59조의 2).

9) 네이버 포스트(국세청 홍보과), 누리우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70432&memberNo=4795084&vType=VERTICAL> (2019. 5. 13 인출).

〈표 I-4-3〉 양육 관련 세금 혜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8년 12월 말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 자녀 세액 공제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0세 이하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 연 60만원 4명 : 연 90만원 5명 : 연 12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급)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이상 : 연 70만원
2.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인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짐
3.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	과세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의 15%, 고등학생이하 1명당 연 300만원
4.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비과세
5.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비과세

주: 1) 자녀장려금은 5월 8월 두 번 신청하며, 2018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등에 대해 2019년 5월에 신청하고,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함.  
2) 총 급여액 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직계존비속·전문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 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함.  
자료: 1) 네이버 포스트(국세청 홍보포), 누리우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70432&memberNo=4795084&vType=VERTICAL> (2019. 5. 13 인출).  
2)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세상, <https://blog.naver.com/ntscafe/221534002089> (2019. 5. 13 인출).  
3) 기획재정부(2019. 7. 25),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4)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1.  
6)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7)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호 마, 3호 며.

한편,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로써, 장려금의 지원액은 총 급여액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100조의 31).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자녀당 연

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고등학생이하 자녀의 교육비까지 지원된다(소득세법 제 59조의 4).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출산 관련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지원의 목적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이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금에서의 손실이 없도록 방지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소득세법 제 12조 3호 마, 3호 머).

이상에서 언급된 양육 관련 세제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영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현금성 지원 제도에 비해 폭넓은데 반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원 방식이 세금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들의 경우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19년도 아동수당의 확대와 맞물려 자녀 세액 공제 제도와 자녀 장려금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과 인지, 선호 등에 관한 설문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2019년에 조정된 자녀 세액 공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6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중복수혜가 삭제된 점을 꼽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9. 7. 25). 예컨대, 어떤 가구에 초등 3학년자녀와 아동을 받는 만5세 자녀가 있었다면, 2019년부터는 만6세미만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한 가구의 해당 자녀는 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공제는 연 30만원이 아닌 15만원이 된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연간 15만원 감소하는 반면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므로,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은 총량적 차원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주지할 점은 세제 지원의 적용시점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이므로, 영유아 가구들이 2019년에 적용받은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2018년도에 아동수당 지원을 받은 영유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지원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중복수혜 한 상태이므로, 이와 비교하여 혜택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까지는 1명 초과 1명당 15만원이 적용되었으나, 이미 2018년도에 폐지된 상태이다(소득세법 제 59조의 2).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저출산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원과 무관하게 지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소득세법 제 59조의 4).

〈표 I-4-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변화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도
자녀세액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	〈좌동〉	〈좌동〉 단,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는 중복공제 불가 (*인적공제는 유지)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폐지〉	〈폐지〉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급)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이상 : 연 70만원	〈좌동〉	〈좌동〉

자료: 1) 기획재정부(2019. 7. 25),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3)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제도의 일부 축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인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는 2019년도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정책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기획재정부, 2017. 7.25). 2019년도 자녀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원금은 최대지급액 기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9). 이는 취약 계층 가구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 수혜자의 증가가 소규모에 국한되어 정책적 체감도가 높지 않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표 I-4-5〉 2019년도 자녀 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내용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개정됨
지원 내용	최대지급액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자료: 1) 기획재정부(2019. 7. 25),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9.

## 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은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의 실시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었으나, 아동수당의 도입과 확대 과정에서 제도의 통합 혹은

변경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재발화 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결국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기관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비해 가정 양육수당의 존립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1. 31<sup>10)</sup>). 이에 현행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금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 1)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받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들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바우처를 통해 기관 이용비용을 일부 보조 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장에서 영유아 단위로 부모가 이용비용을 카드를 통해 결제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은 부모(영유아 가구) 지원금일 뿐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강하다(매일경제, 2018.10.20. 보도내용<sup>11)</sup>). 따라서, 이를 현금성 지원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 지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도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보육료 현실화 등을 위해 영아기(부모)보육료 지원금을 일부 인상하였다. 2018년 0세반 영아에 대한 지원금은 종일반 기준 44만1천원이었으며, 1세반 38만8천원, 2세반 32만1천원이었는데(보건복지부, 2018a: 324), 2019년에는 각각 45만4천원, 40만원, 33만1천원으로 인상하였다(복지로, 보육료 지원, 2019. 5.13 인출<sup>12)</sup>). 맞춤반의 경우에도 종일반보다 인상액은 적지만, 일부 이상이 있었다. 반면 유아기(3~5세반)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은 22만원(국공립 유치원은 6만원)

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1. 31),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 제 13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자료집.

11) 매일경제(2018. 10. 20) 보도내용, 사립유치원 교비 멧대로 써도 무혐의...법 갖대 위화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54499/> (2019. 6.10 인출)

12) 복지로, 보육료 지원,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5. 13 인출).

으로 인상 없이 계속 동결 상태이다(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2019. 5. 13 인출<sup>13)</sup>).

〈표 I-4-6〉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				2019년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반	맞춤반	국공립	사립	종일반	맞춤반	국공립	사립
0세반	441	344	-	-	454	354	-	-
1세반	388	302	-	-	400	311	-	-
2세반	321	250	-	-	331	258	-	-
3~5세반	220	-	60	220	220	-	60	220

주: 1) 보육료 지원금은 부모 보육료 지원금 기준임.

2) 기본 보육료 지원금은 종일반 기준 2018년 0세반 437천원, 1세반 238천원, 2세반 161천원에서 2019년도 0세반 485천원, 1세반 264천원, 2세반 179천원으로 인상되었음.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2018년 및 2019년 기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5만원, 사립 유치원은 7만원이나, 부모를 거치지 않고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 되므로 제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안내, p.324.

2) 복지로, 보육료 지원,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5. 13 인출).

3)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9. 5. 13 인출).

## 2) 가정양육수당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은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하게 일반 가정의 12개월 미만 자녀는 20만원, 24개월미만 자녀는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전 자녀까지 10만원이 지원된다(복지로, 양육수당, 2019. 5. 13 인출<sup>14)</sup>). 한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장애아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도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입학하기 전인 2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19.1.14. 보도자료<sup>15)</sup>). 이러한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

13)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9. 5. 13 인출).

14) 복지로,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9. 5. 13 인출).

15) 보건복지부(2019.1.14.) 보도자료,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6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64) (2019. 6.10 인출).

하는 제도로써(여성가족부, 맞춤형서비스 홈페이지16),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의 대체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김성아·김태완, 2017: 92).

〈표 I-4-7〉 가정 양육 수당 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년		
	일반 가정	농어촌	장애	일반 가정	농어촌	장애
12개월 미만	200	200	200	200	200	200
24개월 미만	150	177	200	150	177	200
36개월 미만	100	156	200	100	156	200
48개월 미만	100	129	100	100	129	100
48개월~취학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복지포,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9. 5. 13 인출).

그러나,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은 유아학비 혹은 보육료 부모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이채정, 2017. 7 : 44~48). 반면, 최근에는 아동수당 지원 제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유사성 논란이 증폭되면서, 오히려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체계의 통합 혹은 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서울경제, 2018.12.12. 보도내용17)).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들 사이에서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이 보다 선호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단, 현재 실질적인 제도 변경 안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 영역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 3) 아이돌보미 지원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살펴보았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 정책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에서 크게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

16) 여성가족부 맞춤형서비스 홈페이지, 일·생활균형 수혜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tSn=326](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tSn=326) (2019. 6. 10 인출).

17) 서울경제(2018. 12. 12 보도내용), 연 10조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통합 추진, [https://m.sedaily.com/NewsVlew/1S8FQWT9NS#\\_enliple](https://m.sedaily.com/NewsVlew/1S8FQWT9NS#_enliple) (2019. 6. 10 인출).

는다. 하지만, 저소득 취약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과 함께 비용 지원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는 정책 사업으로, 일부 가구라 할지라도 공적 이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의 경우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당 9,650원의 이용요금 중 85%에 해당하는 8,203원이 지원되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80%에 해당하는 7,720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19. 5. 13 인출<sup>18)</sup>). 한편, 질병감염아동에 지원금은 가형과 나형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원되며, 가형 가구의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당 이용요금 1만1,580원 중 85%에 해당하는 9,813원이 지원된다. 이때, 아이돌보미의 정부 지원 시간은 여간 720시간이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19. 5. 13 인출).

〈표 I-4-8〉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금

시간당 지원 금액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공통)		영아 종일제 (만3개월이상~만36개월이하)	질병감염아동지원	
	일반형 (12.1.10이후 출생아)	일반형 (11.12.31이전 출생아)		12.1.1 이후 출생아	11.12.31 이전 출생아
가형	8,203원	7,238원	7,720원	9,843원	8,685원
나형	5,308원	1,93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다형	1,448원	1,448원	1,448원	-	-
라형	-	-	-	-	-

주: 1) 2019년 지원금 적용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은 75%이하(346만원), 나형은 120%이하(553만6천원), 다형은 150%이하(692만원), 라형은 150% 초과하는 경우에 속함.

2) 이용 요금은 일반형 기준 9,650원, 종합형 기준 시간당 12,550원이며, 이용 요금에서 위의 지원금만큼을 지원한 후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예컨대 가형 가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부담 비중은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85%,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65.4%임.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9. 5. 13 인출).

즉,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소득에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경우에도 이용비용의 전액 지원이 아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개별서비스

1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9. 5. 13 인출).

는 서비스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지불되는데, 이러한 비용 지원 체계는 저소득 가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을 받는 대상 가구를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양육 관련 공적 이전 소득에 있어서의 최근의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동수당의 확대와 이에 연동되는 세제 지원 정책의 축소(중복수혜 방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도와 아동수당 제도의 통합 논의의 가속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지원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관련 공적 이전 소득이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큰 틀에서의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선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 II

## 2019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0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03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 04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II. 2019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2장에서는 육아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출 실태를 가구특성에 따라 비목 및 세목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구 특성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해보았다. 2장의 내용은 먼저 육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영유아 양육비용 및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차년도 조사에서 추적 조사를 실시한 초등1학년(2012년생)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통해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의 변화를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소비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에 제시된 비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월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이 절에서는 육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실태를 월평균 가구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II-1-1>은 가구 생활비 지출을 비목 및 세목 수준에서 나타낸 것이다.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2만 6천원으로 1차년도의 311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월평균 생활비 중 식비가 84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보육비 45만 3천원, 보험 42만 4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32만원, 교통비 27만 9천원, 주거·관리비 26만 2천원 순이었다. 이때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등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은 비소비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비지출인 생활비 지출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주거·관리비의 세목으로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20만 8천원, 월세는 평균 4만 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총 식비 84만원 중 외식비는 26만 3천원을 차지하였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를 살펴보면, 가족 여행에 19만 4천원, 관람 체험 4만 2천원, 완구 구매 3만 9천원, 도서구매 4만 5천원 수준으로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액				생활비 지출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시)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311.9	(100.0)	332.6	(100.0)	278.6	(100.0)	298.6	(100.0)
1.식비(외식비포함)	81.1	( 26.5)	84.0	( 26.0)	81.1	( 29.9)	84.0	( 29.1)
1-1.외식비	25.0	( 8.0)	26.3	( 7.9)	25.0	( 9.0)	26.3	( 8.9)
2.주거/관리비	25.3	( 8.7)	26.2	( 8.3)	-	-	-	-
2-1.관리비 및 수도/ 광열비 등	19.7	( 6.8)	20.8	( 6.6)	-	-	-	-
2-2.월세	4.2	( 1.5)	4.3	( 1.3)	-	-	-	-
3.기기/집기	6.2	( 1.7)	8.1	( 2.2)	6.2	( 1.9)	8.1	( 2.4)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 5.9)	18.9	( 5.7)	18.3	( 6.6)	18.9	( 6.4)
5.보건/의료비	7.0	( 2.3)	8.9	( 2.7)	7.0	( 2.6)	8.9	( 3.0)
6.교육/보육비	41.0	( 12.0)	45.3	( 12.6)	41.0	( 13.4)	45.3	( 14.1)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 오락비)	32.3	( 9.8)	32.0	( 8.9)	32.3	( 11.0)	32.0	( 9.9)
7-1.가족여행 등	19.8	( 5.9)	19.4	( 5.2)	19.8	( 6.6)	19.4	( 5.8)
7-2.관람 체험학습	4.1	( 1.3)	4.2	( 1.2)	4.1	( 1.5)	4.2	( 1.4)
7-3.완구	4.0	( 1.3)	3.9	( 1.2)	4.0	( 1.4)	3.9	( 1.3)
7-4.도서구매	4.5	( 1.4)	4.5	( 1.3)	4.5	( 1.5)	4.5	( 1.4)
8.교통비	26.4	( 8.8)	27.9	( 8.7)	26.4	( 10.0)	27.9	( 9.8)
9.통신비	17.1	( 5.9)	17.7	( 5.7)	17.1	( 6.7)	17.7	( 6.4)
9-1.휴대전화비	12.5	( 4.4)	12.2	( 3.9)	12.5	( 4.9)	12.2	( 4.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 4.4)	13.3	( 4.2)	12.9	( 4.9)	13.3	( 4.7)
11-2.보험	36.3	( 11.6)	42.4	( 12.7)	36.3	( 11.6)	42.4	(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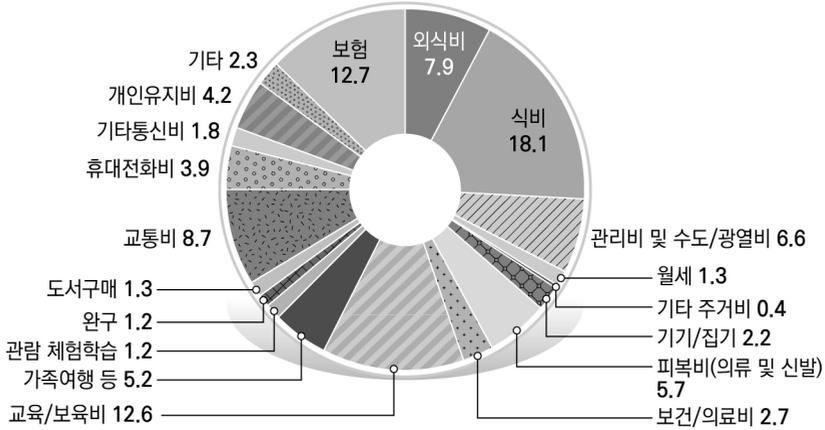
주: 1) 비목 및 세부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비목별 생활비 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비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가장 많고, 보험료 12.7%, 교육·보육비용이 12.6%,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8.9%, 교통비 8.7%, 주거·관리비 8.3% 순이었다. 한편, 보건 의료비는 2.7%, 기기 및 집기 구매비는 2.2%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비 비목과 양육비용 비목을 연계하여 자녀별 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운 주거·관리비와 기타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298만 6천원이었다.

[그림 II-1-1] 가구 생활비 지출 구성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II-1-2〉는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라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을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357만 8천원인 반면,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312만원으로 그 차이는 45만 8천원에 달하여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가구소득 역시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은 240만 5천원이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 지출액도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생활비 지출 총액은 425만 3천원이었다.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총액을 고려할 때,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70% 이하를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생활비 부담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어 양육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2차년도 조사 표본의 특성별로는 대체 표본의 지출액이 341만7천원으로 가장 높고, 추적 조사 표본, 신규표본 순이었다. 특히 신규 표본의 생활비 지출 총액이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신규 표본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출생아 혹은 2019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가구로, 자녀 연령이 적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전체 표본에 비해 많은 특징에 기인한다.

〈표 II-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311.9	332.6	335.8	341.7	302.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4.5	357.8	361.5	364.9	314.7
	외벌이	292.5	312.0	313.9	318.8	296.6
	<i>t</i>	7.1***	8.1***	6.7***	3.9***	1.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4.5	240.5	236.2	242.6	259.5
	300~399만원 이하	266.9	277.1	280.4	285.6	257.3
	400~499만원 이하	310.1	322.5	328.4	315.1	307.5
	500~599만원 이하	345.6	360.3	360.2	359.9	362.0
	600만원 이상	412.2	425.3	426.0	440.7	381.2
	<i>F</i>	158.7***	146.6***	94.4***	35.7***	14.5***

주: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표 II-1-3〉은 자녀수별 가구 생활비 지출을 비목과 세목 수준에서 보여준다. 자녀수에 따라 가구 생활비 지출총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비목은 식비, 관리비, 피복비, 교육/보육비, 관람 체험학습, 통신비, 휴대전화비, 보험 등이었다. 특히 교육/보육비는 총 자녀수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30만 6천원이었으나 3명이상인 경우 68만 5천 원으로 차이가 2배 이상, 금액으로는 약 38만원에 달하였다. 이 외에 식비(외식비 포함)의 경우에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월평균 7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나, 3명 이상인 경우 94만 5천원을 지출하였다. 식비와 교육/보육비 같은 경우 자녀 당 비용이 일정액 이상 소요되는 특징을 가진 비목으로, 다른 자녀와 서비스 및 물품 등을 공유할 수 없는 비목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수 증가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비목이라 볼 수 있다.

〈표 II-1-3〉 총 자녀수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 자녀수별 가구 생활비 지출			
		1명	2명	3명이상	F
사례수	(1,902)	(660)	(987)	(255)	-
총계	332.6	304.5	339.8	377.5	37.9***
1.식비(외식비포함)	84.0	78.2	85.1	94.5	20.1***
1-1.외식비	26.3	25.9	26.3	27.3	0.5
2.주거/관리비	26.2	25.8	26.2	27.6	1.3
2-1.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20.8	20.2	21.1	21.7	3.6*
2-2.월세	4.3	4.1	4.3	4.7	0.2
3.기기/집기	8.1	8.4	8.1	7.6	0.1
4.피복비(의류및신발)	18.9	17.2	19.2	22.3	14.7***
5.보건/의료비	8.9	8.0	9.2	10.3	4.3*
6.교육/보육비	45.3	30.6	49.1	68.5	85.8***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0	30.8	32.9	31.8	0.5
7-1.가족여행 등	19.4	19.6	19.9	16.9	0.6
7-2.관람 체험학습	4.2	3.4	4.5	5.2	15.9***
7-3.완구	3.9	3.7	4.0	4.4	2.4
7-4.도서구매	4.5	4.1	4.5	5.4	2.0
8.교통비	27.9	27.7	28.0	28.2	0.1
9.통신비	17.7	17.2	17.5	19.9	16.1***
9-1.휴대전화비	12.2	11.4	12.3	14.2	17.8***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3.3	13.4	13.1	13.9	0.8
11-2.보험	42.4	38.7	44.2	45.2	7.3***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7.8	8.5	7.3	7.7	2.5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1-4〉는 맞벌이와 외벌이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을 비목과 세목 수준에서 보여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월세, 가족여행, 휴대전화비, 개인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금융상품(저축 및 보험 납입금)으로 외벌이는 99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맞벌이는 131만 6천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차이이기보다는 가구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교육/보육비의 경우 외벌이는 38만 7천원을 지출한 반면 맞벌이는 53만 3천원을 지출하여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교육/보육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1-4〉 맞벌이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여부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외벌이	t
사례수	(1,902)	(856)	(1,046)	-
총계	332.6	357.8	312.0	8.1 ***
1. 식비(외식비포함)	84.0	86.2	82.1	2.4 *
1-1. 외식비	26.3	27.8	25.0	3.2 **
2. 주거/관리비	26.2	27.9	24.9	4.1 ***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20.8	21.8	20.0	4.4 ***
2-2. 월세	4.3	4.8	3.9	1.5
3. 기기/집기	8.1	9.2	7.3	2.0 *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9	20.4	17.7	4.5 ***
5. 보건/의료비	8.9	9.2	8.7	1.0
6. 교육/보육비	45.3	53.3	38.7	7.2 ***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0	35.2	29.4	2.7 **
7-1. 가족여행 등	19.4	21.1	18.0	1.6
7-2. 관람 체험학습	4.2	4.6	3.8	3.6 ***
7-3. 완구	3.9	4.2	3.7	2.0 *
7-4. 도서구매	4.5	5.3	3.8	3.6 ***
8. 교통비	27.9	29.6	26.5	4.8 ***
9. 통신비	17.7	18.5	17.2	4.2 ***
9-1. 휴대전화비	12.2	12.5	12.0	1.9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3.3	13.6	13.1	1.1
11. 금융상품(저축및보험납입금)	113.8	131.6	99.3	7.9 ***
11-1. 저축	44.0	52.7	36.8	5.6 ***
11-2. 보험	42.4	46.1	39.4	4.5 ***
11-3. 원리금상환	15.2	18.7	12.3	4.3 ***
11-4. 이자 상환	11.0	12.6	9.7	3.3 ***
12. 이전자출	13.5	16.6	10.9	6.4 ***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7.8	8.5	7.1	2.9 **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1-5〉은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생활비 지출을 비목과 세목 수준에서 나타낸 것이다. 월세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 생활비 지출에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가구 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월평균 26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월평균 70만원을 지출하여 약 2.6배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보험, 교통비, 피복비(의류 및 신발), 식비(외식비포함),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통신비 순이었다.

〈표 II-1-5〉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생활비 지출					F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만원 이상	
사례수	(153)	(510)	(485)	(347)	(407)	-
총계	240.5	277.1	322.5	360.3	425.3	146.6***
1. 식비(외식비포함)	66.1	75.5	83.8	87.8	98.3	35.6***
1-1. 외식비	18.1	22.0	26.4	28.1	32.9	27.2***
2. 주거/관리비	24.7	23.8	26.2	26.8	29.4	7.8***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6.8	18.9	21.3	22.0	23.2	24.0***
2-2. 월세	7.2	3.8	4.0	3.7	4.6	2.3
3. 기기/집기	6.5	6.5	7.5	9.4	10.5	2.7*
4. 피복비(의류및신발)	13.5	15.7	18.1	20.9	24.4	37.0***
5. 보건/의료비	6.8	7.8	8.8	9.3	11.0	6.2***
6. 교육/보육비	26.5	29.8	41.2	52.9	70.0	69.4***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8.6	24.0	30.8	33.6	47.3	20.5***
7-1. 가족여행 등	10.1	13.8	17.4	20.7	31.2	13.5***
7-2. 관람 체험학습	2.6	3.1	4.4	4.5	5.7	22.6***
7-3. 완구	2.7	3.5	3.8	4.2	4.8	7.5***
7-4. 도서구매	3.1	3.6	5.1	4.2	5.6	5.0***
8. 교통비	18.7	24.9	26.6	31.6	33.5	47.3***
9. 통신비	15.5	16.7	17.2	19.0	19.5	20.0***
9-1. 휴대전화비	11.2	11.3	11.8	13.4	13.3	10.0***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0.7	12.4	14.1	14.4	13.5	5.9***
11-2. 보험	27.5	33.8	40.7	46.2	57.7	49.4***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4	6.3	7.6	8.5	10.2	11.0***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1-6〉은 가계 소비지출 패턴을 보여주는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를 제시하였다. 엔젤 지수는 가구 생활비 총액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슈바베 지수는 가구 생활비 총액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엔젤지수는 가구 생활비 총액 중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엔젤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지수는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엔젤지수, 슈바베지수가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1명에 비해 엔젤지수와 슈바베 지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엔젤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가 모두 낮았다.

〈표 II-1-6〉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6.5	8.7	29.1	26.0	8.3	27.9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5.5	8.2	29.4	24.8	8.3	27.9
	외벌이	27.4	9.2	28.7	26.9	8.4	27.9
총 자녀수	1명	27.2	9.1	27.6	26.6	8.9	26.9
	2명	25.8	8.6	30.6	25.6	8.1	29.3
	3명이상	27.4	7.9	27.5	25.8	7.8	25.2

주: 1) 엔젤 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 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식비와 주거비의 비율이 높아 가구 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엔젤지수와 슈바베 지수가 각각 28.3, 10.7 이었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엔젤지수는 23.7, 7.3이었다. 특기할 점은 엔젤지수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는 육아 가구들이 총 생활비 지출의 일정 수준을 자녀 양육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내포하며, 따라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자녀 양육비용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II-1-7〉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8.3	11.8	28.1	28.3	10.7	28.5
	300~399만원 이하	27.4	9.1	28.9	27.7	8.8	27.1
	400~499만원 이하	27.2	8.4	28.1	26.1	8.4	28.6
	500~599만원 이하	25.9	8.2	30.6	24.7	7.8	27.6
	600만원 이상	23.9	7.0	29.7	23.7	7.3	28.2

주: 1) 엔젤 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 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살펴본다.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녀는 초등 이상의 자녀도 포함한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2). 반면,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은 초등 이상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소비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개인 단위로 산출된 금액이다.

### 가. 양육비용 실태 개관

〈표 II-2-1〉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비목과 세목 수준에서 보여준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양육비용은 다소 늘어나 월 평균 총 양육비용은 126만 5천원이었으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2만 6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66만원이었다.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모두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이었다. 한편, 가장 지출액이 적은 비목은 교통비, 통신비였다.

〈표 II-2-1〉 비목별 양육비용 변화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사례수	1,648	1,648	2,277	1,902	1,665	2,334
총계	115.1	91.9	66.0	126.5	92.6	66.0
1. 식비(외식비포함)	24.4	19.2	13.8	26.7	19.7	14.1
1-1. 외식비	5.9	4.6	3.3	6.6	4.6	3.3
3. 기기/집기	2.9	2.5	1.8	3.5	2.6	1.9
4. 피복비(의류및신발)	9.3	7.3	5.3	10.0	7.5	5.4
5. 보건/의료비	4.4	3.8	2.7	5.2	4.5	3.2
6. 교육/보육비	39.2	30.7	22.1	44.1	29.5	21.1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9.2	15.8	11.4	18.4	14.3	10.2
7-1. 가족여행 등	8.9	7.2	5.2	8.8	6.9	4.9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7-2.관람 체험학습	2.3	1.8	1.3	2.3	1.5	1.1
7-3.완구	3.8	3.4	2.4	3.6	3.2	2.2
7-4.도서구매	4.2	3.4	2.5	3.8	2.7	2.0
8.교통비	0.6	0.3	0.2	0.8	0.4	0.3
9.통신비	0.5	0.1	0.0	0.8	0.1	0.0
9-1.휴대전화비	0.4	0.0	0.0	0.6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4.5	3.2	5.5	4.9	3.5
11-2.보험	9.4	7.7	5.5	11.6	9.0	6.4

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II-2-2〉는 2차년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1차년도와 비교할 때, 2차년도에 총양육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서 36.9%로 증가하였다. 1%포인트 이상 증가한 항목은 식비(외식비포함), 피복비(의류및신발), 휴대전화비, 통신비이었다. 한편, 비중이 감소한 비목은 기기/집기, 도서구매, 관람 체험학습, 보건/의료비, 완구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교육/보육비, 완구, 도서구매 등의 경우에는 총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비목으로, 이들 비목이 자녀 양육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 지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2-2〉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율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만원)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만원)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총계	311.9	35.8	29.1	21.9	332.6	36.9	27.9	19.9
1.식비(외식비포함)	81.1	30.7	24.6	18.1	84.0	32.6	24.8	17.7
1-1.외식비	25.0	25.8	20.1	14.8	26.3	26.1	18.4	13.1
3.기기/집기	6.2	50.4	43.3	34.4	8.1	43.6	34.6	24.7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54.1	43.9	32.8	18.9	56.0	43.8	31.3
5.보건/의료비	7.0	71.5	63.4	49.1	8.9	67.0	56.9	40.5
6.교육/보육비	41.0	96.6	79.1	60.8	45.3	96.8	74.1	52.0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만원)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만원)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62.9	52.8	40.5	32.0	61.6	48.9	35.0
7-1.가족여행 등	19.8	45.7	37.4	28.2	19.4	46.3	37.5	26.9
7-2.관람 체험학습	4.1	61.8	49.2	37.9	4.2	56.7	40.6	29.0
7-3.완구	4.0	95.0	86.9	69.4	3.9	91.1	78.9	55.9
7-4.도서구매	4.5	92.4	75.3	59.7	4.5	86.1	63.7	45.1
8.교통비	26.4	03.0	01.6	01.2	27.9	3.3	2.0	1.4
9.통신비	17.1	02.5	00.3	00.2	17.7	4.1	0.4	0.3
9-1.휴대전화비	12.5	03.1	00.3	00.2	12.2	4.9	0.4	0.3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42.5	35.7	26.9	13.3	42.6	36.1	25.7
11-2.보험	36.3	30.4	25.2	18.6	42.4	31.0	24.3	17.3

- 주: 1) 비목별 지출 중에서 양육비용 비중을 구함. 즉, 식비 중에서 영유아 자녀의 식비 비중을 의미함.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각 가구별로  $(\text{총양육비용}/\text{가구 총소비지출}) \times 100$ 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예: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3)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자녀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용이 전반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10만원 이상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총 양육비용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약 18만원 가량 많이 지출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양육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는 거의 두배에 달하는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영유아 양육비용은 자녀가 2명일 때 가장 높고,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일 때 가장 높은데, 이는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초등이상의 자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자녀가 적을수록 한명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2-3〉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사례수	(1,902)	(1,902)	(1,665)	(2,334)	
전체	332.6	126.5	92.6	66.0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357.8	136.5	99.6	73.5
	외벌이	312.0	118.4	86.9	60.4
	<i>t</i>	8.1***	5.3***	4.2***	7.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40.5	86.2	70.0	53.1
	300~399만원	277.1	100.2	75.9	54.1
	400~499만원	322.5	123.2	92.0	63.1
	500~599만원	360.3	137.5	98.6	72.4
	600만원 이상	425.3	169.3	118.2	84.5
	<i>F</i>	146.6***	76.4***	32.7***	48.5***
총 자녀수	1명	304.5	86.6	83.3	83.3
	2명	339.8	138.2	97.9	63.2
	3명이상	377.5	184.9	94.9	52.3
	<i>F</i>	37.9***	245***	10.5***	79.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표 II-2-4〉에서 가구 생활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가구 생활비와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었다.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2차년도에 맞벌이가 20.6%, 외벌이가 19.4%를 차지하여 맞벌이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큼을 알 수 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나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 자녀수가 1명 인 경우 총 양육비용은 27.6%,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26.9%인 반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총 양육비용은 48.4%,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13.9%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모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2-4〉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비율

단위 : 만원, % (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생활비 대비 비율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사례수	(1,902)	(1,902)	(1,665)	(2,334)	
전체	332.6	36.9	27.9	19.9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357.8	37.0	27.9	20.6
	외벌이	312.0	36.9	27.9	19.4
	<i>t</i>	8.1***	0.2	0.1	3.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40.5	35.2	28.5	21.7
	300~399만원	277.1	35.2	27.1	19.3
	400~499만원	322.5	37.6	28.6	19.6
	500~599만원	360.3	37.2	27.6	20.3
	600만원 이상	425.3	38.6	28.2	20.2
	<i>F</i>	146.6***	5.1***	1	2.9*
총 자녀수	1명	304.5	27.6	26.9	26.9
	2명	339.8	40.2	29.3	18.9
	3명이상	377.5	48.4	25.2	13.9
	<i>F</i>	37.9***	468.4***	12.7***	372.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2-5〉에서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은 28.2%, 영유아 양육비용은 20.9%,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14.9%를 차지하였다. 외벌이는 맞벌이에 비해 총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이 모두 높았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총 자녀수에 따라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지만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및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외벌이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났다.

〈표 II-2-5〉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 가구 소득 총액(만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전체	498.7	28.2	20.9	14.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84.0	25.4	18.8	13.9
	외벌이	428.9	30.6	22.7	15.7
	<i>t</i>	11***	-3.5***	-4.1***	-3.4***
가구	299만원 이하	240.8	46.9	37.3	28.3

구분		평균 가구 소득 총액(만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소득	300~399만원	344.4	29.2	22.1	15.7
	400~499만원	437.9	28.2	20.9	14.4
	500~599만원	535.0	25.7	18.4	13.5
	600만원 이상	830.7	22.2	15.6	11.2
	<i>F</i>	331.8***	18***	30.5***	48.7***
총 자녀수	1명	483.2	19.5	18.8	18.8
	2명	503.1	31.1	22.1	14.2
	3명이상	522.1	39.7	21.9	12.1
	<i>F</i>	1.8	47.7***	4.9**	29.2***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 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 나.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이 소절에서는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비목별로 살펴본다. 첫째, 1차와 2차년도 영유아 양육비용에서 식비 총액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식비 총액 및 구성비 모두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2차년도에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식비 총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외벌이의 경우 구성비가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식비 총액은 늘어났으나 가구 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와 300만원~399만원이하인 가구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앞서 엔겔지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양육비용에 있어서도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유아를 위해 지출하는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총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식비 총액과 구성비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녀수가 같더라도 자녀가 모두 영유아일 때 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영유아 양육비용: 식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19.2	23.0	19.7	23.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9.2	21.1	19.4	21.6
	외벌이	19.2	24.7	19.9	24.9
	<i>t</i>	-0.1	-5.5***	-0.7	-4.8***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6.1	28.0	16.5	24.9
	300~399만원 이하	18.2	24.5	18.5	26.0
	400~499만원 이하	20.1	24.0	20.7	24.3
	500~599만원 이하	21.3	21.3	19.5	21.8
	600만원 이상	19.9	18.0	21.5	20.1
	<i>F</i>	5.6***	22.5***	4.5**	10.3***
총 자녀수	1명	15.8	21.8	16.1	22.7
	2명	20.8	23.1	21.5	23.5
	3명이상	24.0	26.9	21.8	25.5
	<i>F</i>	38.2***	10.1***	27.7***	3.2*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1차와 2차년도 피복비 총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의 피복비 총액이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맞벌이의 경우 피복비 총액이 외벌이에 비해 높으나 구성비는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피복비 총액은 늘어났으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총 자녀수가 같더라도 자녀 중 유아가 있는 가구의 피복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만 있는 경우 평균 5만 8천원을 피복비로 지출하였으나, 영유아로만 구성된 경우 평균 11만 8천원을 지출하였다.

〈표 II-2-7〉 영유아 양육비용: 피복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7.3	8.8	7.5	8.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5	8.2	7.6	8.4
	외벌이	7.2	9.3	7.4	8.9
	<i>t</i>	0.7	-3.7***	0.7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7	9.7	6.2	9.7
	300~399만원 이하	6.8	9.1	6.7	8.9
	400~499만원 이하	6.9	8.5	7.7	8.7
	500~599만원 이하	8.2	8.5	7.8	8.3
	600만원 이상	9.0	8.2	8.7	8.2
	<i>F</i>	12.5***	2.6*	6.7***	1.8
총 자녀수	1명	6.4	9.0	6.3	8.5
	2명	8.0	8.8	8.2	8.7
	3명이상	7.4	8.1	8.0	8.9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i>F</i>	11.7***	1.3	16.1***	0.5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총액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 보건/의료비 총액 및 구성비가 모두 1차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맞벌이의 보건/의료비 총액은 외벌이에 비해 높았으나 구성비는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 총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의료비가 지출이 높았다.

〈표 II-2-8〉 영유아 양육비용: 보건/의료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3.8	4.6	4.5	5.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8	4.3	4.4	5.0
	외벌이	3.8	4.9	4.5	5.4
	<i>t</i>	0.2	-3.3**	-0.2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	5.2	3.8	5.7
	300~399만원 이하	3.7	5.1	4.5	6.2
	400~499만원 이하	3.7	4.5	4.4	5.1
	500~599만원 이하	4.6	4.7	4.4	4.7
	600만원 이상	3.9	3.8	4.9	4.4
	<i>F</i>	4.5**	5.9***	0.8	5.8***
총 자녀수	1명	3.5	5.0	4.0	5.6
	2명	4.0	4.4	4.7	4.9
	3명이상	4.0	4.4	4.7	5.6
	<i>F</i>	3.7*	3.3*	2.4	3.5*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교육/보육비 총액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총액 및 구성비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맞벌이의 교육/보육비 총액 및 구성비 모두 외벌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앞서 살펴본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와 다른 양상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 총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299만

원이하인 가구는 평균 18만 9천원을 소비한 반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평균 46.2만원을 소비하여 약 2.4배에 달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이 늘어났으며,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자녀수가 같더라도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아 및 초등학생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이 컸다.

〈표 II-2-9〉 영유아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30.7	28.7	29.5	28.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7.1	31.8	36.3	31.8	
	외벌이	25.2	26.1	24.1	25.1	
	<i>t</i>	6.7***	5.7***	6.6***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7.2	23.6	18.9	25.6	
	300~399만원 이하	22.2	26.2	19.0	23.1	
	400~499만원 이하	26.5	27.8	26.4	26.6	
	500~599만원 이하	38.6	30.8	35.9	31.6	
	600만원 이상	49.7	34.9	46.2	34.1	
<i>F</i>		48.1***	14.5***	36.5***	18.9***	
총 자녀수	1명	28.3	27.3	27.1	25.9	
	2명	32.4	30.0	30.6	29.0	
	3명이상	31.3	28.2	31.2	29.7	
	<i>F</i>	2.4	3.2*	2.0	5.1**	
자녀구성	1명	영아만	16.9	18.5	13.9	14.7
		유아만	40.9	37.0	42.4	38.7
	2명	영아만	24.3	20.1	22.0	15.9
		유아만	56.6	36.1	52.7	34.8
		영아+유아	38.5	29.9	38.9	29.2
		영아+초등이상	14.1	21.9	11.7	19.7
		유아+초등이상	25.8	34.0	26.7	35.5
	3명이 상	영유아만	58.5	31.4	51.7	29.0
		영유아+초등이상	21.2	27.1	25.4	29.9
	<i>F</i>		29.2***	28.1***	26.4***	47.9***
지역규모	대도시	36.4	30.0	31.8	28.5	
	중소도시	28.7	29.0	28.5	28.4	
	읍면지역	22.3	25.1	26.7	26.0	
	<i>F</i>	17.7***	5.8**	2.5	1.7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표 II-2-10〉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여가 및 문화생활비 총액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2차년도 여가 및 문화생활비 총액 및 구성비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의 여가 및 문화생활비 총액이 외벌이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평균 8만 7천원을 소비한 반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평균 22만 7천원을 소비하여 약 2.6배에 달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3명 이상일 때보다 1명 혹은 2명일 때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이 컸다.

〈표 II-2-10〉 영유아 양육비용: 여가 및 문화생활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15.8	17.6	14.3	15.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7.5	18.1	15.3	15.0
	외벌이	14.4	17.2	13.5	15.5
	<i>t</i>	3.9***	1.5	2.0*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7	14.4	10.2	13.0
	300~399만원 이하	13.0	16.7	11.3	15.2
	400~499만원 이하	15.1	18.2	14.7	15.8
	500~599만원 이하	18.8	18.9	14.6	14.6
	600만원 이상	22.7	19.2	19.0	16.1
<i>F</i>		35.2***	7.7***	11.6***	2.3
총 자녀수	1명	16.0	19.1	14.2	17.0
	2명	16.2	17.1	14.8	14.9
	3명이상	13.4	14.8	12.6	12.2
	<i>F</i>	2.5	11.8***	1.4	16.7***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영유아 양육비용에서 개인유지비(미용 및 주방용품과 같은 생필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비) 총액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개인유지비 총액 및 구성비가 다소 늘어났다. 1차년도에는 맞벌이와 외벌이의 개인유지비 총액에 차이가 없었으나 2차년도에는 외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 개인유지비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수에 따른 개인유지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자녀구성에 따라 영아가 있는 경우 유아 및 초등학생에 비해 개인 유지비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높았다. 이는 어린 연령일수록 기저귀, 목욕용품, 세탁용품 등의 사용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11〉 영유아 양육비용: 개인유지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4.5	5.7	4.9	6.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5	5.1	4.4	5.1
	외벌이	4.5	6.3	5.2	6.7
	<i>t</i>	0.0	-3.7***	-3.0**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0	7.5	4.7	7.8
	300~399만원 이하	4.8	6.7	4.9	6.9
	400~499만원 이하	4.0	5.1	5.2	6.2
	500~599만원 이하	4.5	4.7	5.1	5.9
	600만원 이상	4.9	4.9	4.2	4.0
	<i>F</i>	2.3	11.3***	2.1	12.1***
총 자녀수	1명	4.2	6.3	4.7	7.0
	2명	4.6	5.3	5.0	5.5
	3명이상	4.8	5.5	5.0	5.6
	<i>F</i>	1.5	5.0**	0.6	8.6***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자녀를 위한 보험비 총액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가 1차년도에 비해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높았다.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보험비 총액이 높은 반면, 구성비는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비 총액이 늘어났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비 총액 및 구성비가 모두 증가하였다.

〈표 II-2-12〉 영유아 양육비용: (자녀를 위한) 보험비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7.7	9.0	9.0	1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1	8.9	9.2	10.4
	외벌이	7.3	9.1	8.9	10.7
	<i>t</i>	2.1*	-0.4	0.7	-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0	9.7	6.9	10.0
	300~399만원 이하	7.0	9.2	8.3	11.1
	400~499만원 이하	7.9	9.6	9.3	10.9
	500~599만원 이하	8.2	8.5	8.7	10.0
	600만원 이상	8.9	7.9	10.9	10.3
	<i>F</i>	6.5***	2.7*	6.7***	0.9
총 자녀수	1명	6.1	8.3	6.7	9.2
	2명	8.4	9.3	10.3	11.3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3명이상	9.7	10.1	10.0	11.4
<i>F</i>	27.2***	4.4*	30***	9.9***

주: 구성비는 가구의 총 영유아 양육비용 중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다.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지출 실태

이 소절에서는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지출 실태에 대해 가구 특성별, 자녀 연령별, 비목별로 살펴본다. <표 II-2-13>과 같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은 1차와 2차년도 모두 66만원으로 같으나 2차년도의 구성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0세와 1세는 53만 7천원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여 6세의 일인당 양육비용은 83만원으로 약 1.5배에 달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성장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3>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변화

단위 : 만원, %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사례수	(2,277)	(2,277)	(2,334)	(2,334)	
전체	66.0	20.9	66.0	19.9	
자녀 출생년도	2019년생 (0세)	-	-	53.7	16.7
	2018년생 (1세)	53.6	18.0	53.7	17.4
	2017년생 (2세)	51.1	17.9	58.5	18.4
	2016년생 (3세)	57.5	19.5	59.1	18.4
	2015년생 (4세)	59.6	19.8	67.6	20.7
	2014년생 (5세)	70.3	21.3	72.0	21.3
	2013년생 (6세)	74.9	22.8	83.0	23.1
	<i>F</i>	22.6***	18.0***	24.6***	24.1***

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별 양육비용으로 아동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표 II-2-14>는 가구 특성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를 나타낸다. 맞벌이는 외벌이에 비해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 모두 크게 나타났다. 2차년도 맞벌이의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은 73만 5천원이었으나 외벌이의 경우 60만 4천원으로 나타

났다.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늘어났다. 총 자녀가 1명인 경우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이 83만 3천원이었으나 3명 이상인 경우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이 52만 3천원이었다. 자녀 중 유아에 있는 경우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이 증가하여 영아 및 초등학생에 비해 1.2배 이상이었다.

〈표 II-2-14〉 가구특성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전체		66.0	20.9	66.0	19.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7	21.8	73.5	20.6	
	외벌이	59.0	20.1	60.4	19.4	
	<i>t</i>	9.0***	4.5***	7.3***	3.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4.6	20.1	53.1	21.7	
	300~399만원 이하	55.0	20.4	54.1	19.3	
	400~499만원 이하	64.8	21.0	63.1	19.6	
	500~599만원 이하	73.5	20.9	72.4	20.3	
	600만원 이상	90.8	21.8	84.5	20.2	
<i>F</i>		89.1***	2.3	48.5***	2.9*	
총 자녀수	1명	83.3	27.6	83.3	26.9	
	2명	61.3	19.2	63.2	18.9	
	3명이상	52.1	14.7	52.3	13.9	
	<i>F</i>	93.7***	407.8***	79.1***	372.2***	
자녀구성	1명	영아만	67.9	24.8	68.7	23.8
		유아만	100.3	30.6	100.2	30.4
	2명	영아만	51.0	17.8	55.8	17.7
		유아만	71.2	21.1	73.0	20.7
		영아+유아	60.2	19.2	62.5	19.2
		영아+초등이상	53.5	17.5	56.4	16.6
	3명 이상	유아+초등이상	66.9	19.7	67.7	19.2
		영유아만	57.0	15.9	54.7	14.9
	<i>F</i>		44.5***	123.9***	35***	115.9***

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별 양육비용으로 아동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앞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표 II-2-15〉는 비목 및 세목 수준에 따라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식비(외식비포

함), 피복비 등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비목은 교육/보육비이다. 0세에는 8만 6천원이었으나 6세에는 35만 2천원으로 약 4.1배이었다. 즉, 연령에 따른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의 증가의 대부분이 교육/보육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데 0세에는 5만 4천원이었으나 6세에는 12만 4천원으로 전체 일인당 양육비용 증가폭의 24%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령에 따른 변화가 미미한 비목은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이며, 감소하는 비목은 휴대전화비, 기기/집기, 보건/의료비였다.

〈표 II-2-15〉 영유아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영유아 자녀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F
사례수	(161)	(298)	(297)	(338)	(409)	(405)	(426)	-
총계	53.7	53.7	58.5	59.1	67.6	72.0	83.0	24.6***
1.식비(외식비포함)	10.3	13.6	14.1	13.5	14.5	14.4	15.5	7.1***
1-1.외식비	0.5	1.5	3.1	3.3	3.9	3.8	4.5	28.3***
3.기기/집기	5.3	1.8	2.2	1.4	1.3	1.4	1.8	5.6***
4.피복비(의류및신발)	5.1	5.1	5.4	5.1	5.3	5.4	5.8	1.3
5.보건/의료비	4.4	3.7	3.9	2.9	2.8	2.7	2.9	5.7***
6.교육/보육비	8.6	8.9	11.6	16.5	24.5	27.5	35.2	48.3***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5.4	8.3	10.1	10.2	10.4	11.1	12.4	6.4***
7-1.가족여행 등	3.5	4.1	4.5	4.3	4.8	5.5	6.3	2.5*
7-2.관람 체험학습	0.1	0.4	0.9	1.2	1.4	1.4	1.6	22.7***
7-3.완구	1.4	2.3	2.6	2.4	2.4	2.1	2.2	3.2**
7-4.도서구매	0.5	1.5	2.2	2.3	1.9	2.1	2.3	3.0**
8.교통비	0.2	0.3	0.2	0.3	0.4	0.5	0.4	1.8
9.통신비	0.0	0.0	0.0	0.0	0.1	0.1	0.1	2.6*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0	0.0	0.1	2.0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7.6	5.6	4.3	3.0	2.3	2.4	2.4	72.1***
11-2.보험	6.7	6.6	6.8	6.2	6.0	6.5	6.6	0.8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별 양육비용으로, 아동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일인당 자녀양육비는 증가하였다. 이 항에서는 초등 전환기의 양육비용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에 태어나 2018년에 6세였던 460명과 2019년에 7세 아동 463명의 양육비용을 분석하였다. <표 II-3-1>은 가구 특성별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는 다소 증가하였다. 맞벌이인 경우 외벌이에 비해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 모두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총액 및 구성비 모두 증가하였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양육비용 총액은 59만4천원이었던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양육비용이 105만6천원으로 약 1.8배에 달하였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초등학교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은 105만원이었으나 3명 이상인 경우 61만 4천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도 감소하였다.

<표 II-3-1> 가구특성별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사례수		(460)	(460)	(463)	(463)
전체		76.5	22.8	81.0	2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4.0	23.4	88.4	22.8
	외벌이	70.5	22.3	74.9	23.2
	<i>t</i>	3.1**	1.4	3.6***	-0.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9.3	22.2	59.4	26.0
	300~399만원 이하	63.4	22.4	67.7	23.0
	400~499만원 이하	72.7	23.4	77.8	22.7
	500~599만원 이하	75.7	20.8	84.6	21.8
	600만원 이상	112.2	24.5	105.6	23.3
	<i>F</i>	25.9***	2.4*	19.7***	1.7
총 자녀수	1명	104.3	30.7	105.0	31.6
	2명	70.5	21.3	78.7	22.1
	3명이상	55.6	16.2	61.4	16.4
	<i>F</i>	34.9***	122.2***	35.8***	133.2***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구성비는 전체 생활비 대비 초등학교 양육비 총액의 비중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표 II-3-2>와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한 비목은 교육/보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식비(외식비 포함),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보험, 피복비(의류 및 신발) 순이었다.

유아기에 있던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양육비용이 큰 변화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금액측면에선 식비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며, 구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다른 비목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 혹은 감소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유아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육아 가구들은 증가하는 식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비 지출을 감소시켜 교육/보육비 지출에 집중하는 양상의 소비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3-2> 비목별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단위 :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사례수	(460)	(460)	(463)	(463)
총계	76.5	100.0	81.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14.8	21.5	16.5	21.7
1-1.외식비	3.9	5.4	4.3	5.5
3.기기/집기	1.7	1.7	2.8	2.3
4.피복비(의류및신발)	5.4	7.7	5.8	7.5
5.보건/의료비	2.6	3.7	2.6	3.3
6.교육/보육비	31.0	37.3	32.7	39.2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2.6	16.0	10.9	12.9
7-1.가족여행 등	5.5	7.5	5.6	6.5
7-2.관람 체험학습	1.5	2.1	1.6	1.9
7-3.완구	2.4	3.0	1.6	2.1
7-4.도서구매	3.2	3.5	2.1	2.5
8.교통비	0.2	0.3	0.4	0.5
9.통신비	0.1	0.1	0.8	1.0
9-1.휴대전화비	0.1	0.1	0.6	0.8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2.5	3.8	2.3	3.1
11-2.보험	5.5	7.9	6.3	8.6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인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구성비는 양육비용 총액 중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각 가구별 비중을 산출하여 비중을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표 II-3-3>은 1차년도 원표본이 패널조사로 유지된 초등 전환기 자녀 327명에 한하여 초등 진학 이후 양육비용 증감을 비목과 세목 수준 및 가구 특성 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구 특성에 따라 비목 수준에서 양육비용 증감을 살펴보면, 증가폭이 뚜렷한 비목은 교육/보육비, 식비, 보험비였다. 이를 통해서도 유아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다수의 육아 가구들이 다른 소비지출을 자제하고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보험비 증가가 컸던 반면, 가구소득에 따라 증감 패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초 등진학 이후 교육비, 식비는 증가하였으나 여가문화생활비는 감소하였다. 자녀 중 초등학교생이 있는 경우 여가문화생활비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표 II-3-3> 초등 진학 이후 비목별 양육비용 증감 (추적 조사 성공 아동, 2012년생)

단위 : 만원, (명)

구분		식비	기기/집기	피복	보건 의료	교육 보육	여가문화생활	개인 유지	보험
사례수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7)
전체		2.1	1.4	0.8	-0.1	2.3	-1.3	-0.1	1.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8	1.1	1.3	0.2	-0.1	-1.7	-0.2	2.6
	외벌이	2.3	1.6	0.3	-0.4	4.2	-0.9	0.0	0.2
	<i>t</i>	-0.5	-0.3	1.5	1.1	-1.3	-0.5	-0.7	3.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	1.2	0.2	-0.4	4.2	-1.4	0.2	0.9
	300~399만원 이하	2.3	1.5	0.3	-0.5	3.2	-0.9	0.0	0.6
	400~499만원 이하	2.9	1.4	1.4	-0.1	1.3	-0.1	0.1	1.4
	500~599만원 이하	2.4	-0.8	0.6	-0.5	5.8	-4.3	-0.5	1.7
	600만원 이상	0.4	2.9	1.0	0.7	-1.0	-1.0	-0.4	1.8
	<i>F</i>	0.7	0.5	0.5	0.6	0.5	0.8	0.7	0.5
총 자녀수	1명	3.8	0.7	1.0	0.4	4.6	-5.9	0.1	1.0
	2명	1.9	1.4	0.5	-0.4	0.6	0.5	-0.1	1.3
	3명이상	0.8	2.0	1.3	-0.1	5.2	-1.5	-0.6	1.3
	<i>F</i>	1.6	0.1	0.5	0.6	0.9	5.6**	1.1	0.1

주: 1차년도 원표본이 유지되는 초등 전환기 아동에 한함. 증감은 2019년도의 양육비용에서 2018년도 양육비용을 감한 값의 평균.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 4.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및 소비의 변화를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영유아 부모에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충분한 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 II-4-1>과 같이 2차년도(5점 척도)에는 충분성에 대한 태도가 평균 3.0(환산점수 60점)이었다. 이는 점수를 100으로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1차년도(4점 척도)의 2.5(환산점수 62.5점)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3%에 그쳤으나, 600만원이상인 경우 36.9%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녀 수는 늘어날수록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자녀수가 1명인 경우 33.5%에 달하였으나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17.3%에 이었다.

<표 II-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점, %(가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전체	2.5	51.8	(1,648)	3.0	26.3	(1,902)
맞벌이 가구	맞벌이	2.6	( 762)	3.0	28.2	( 856)
	외벌이	2.4	( 886)	3.0	24.8	(1,046)
여부	$t/x^2$	5.8***	33.403***	2.2*	6.1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	( 223)	2.6	16.3	( 153)
	300~399만원	2.4	( 440)	2.8	19.2	( 510)
	400~499만원	2.5	( 384)	3.1	27.8	( 485)
	500~599만원	2.6	( 271)	3.0	26.5	( 347)
	600만원 이상	2.7	( 330)	3.3	36.9	( 407)
	$F/x^2$	29.8***	122.793***	23.3***	134.980***	
총 자녀수	1명	2.6	( 638)	3.1	33.5	( 660)
	2명	2.5	( 818)	3.0	23.8	( 987)
	3명이상	2.3	( 192)	2.8	17.3	( 255)
	$F/x^2$	15.0***	39.803***	14.7***	38.029***	

주: 1) 1차년도는 4점 척도, 2차년도는 5점 척도임.

2) 충분함은 전체 응답자 중 '매우충분'과 '대체로 충분'을 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1차와 2차년도의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변화는 설문 조사 상에서 척도가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변화하면서, 빈도 값에 대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가구특성별 차이는 양육비용의 충분성은 2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많지 않았다. 한편, 가구 생활비 및 영유아 양육비용 규모에 따라 충분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이 늘어날수록 현재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는 가구 생활비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4-2〉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점, %(가구)

구분		2차년도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전체		3.0	26.3	(1,902)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8	17.7	( 124)
	200~299만원	3.0	25.4	( 728)
	300~399만원	3.0	26.7	( 655)
	400만원 이상	3.1	29.9	( 395)
	$F/x^2$	3.7*	13.302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9	22.2	( 347)
	50~99만원	3.0	27.9	( 734)
	100~199만원	3.0	24.5	( 497)
	200만원 이상	3.2	35.6	( 87)
	$F/x^2$	2.1	14.447	

주: 1) 1차년도는 4점 척도, 2차년도는 5점 척도임.

2) 충분함은 전체 응답자 중 '매우충분'과 '대체로 충분'을 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영유아 부모에게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는 11.3%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0.4%로 급감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증감을 살펴보면 부담이 늘어난 비목은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이전지출, 교통비/통신비, 피복비(의류및신발)였으며, 식비(외식비 포함), 여가 및 문화생활비, 주거 관리비였다. 가장 부담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전체 응답자의 48.8%가 선택하였다.

〈표 II-4-3〉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단위 : %, %p,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변화 (%p)
	%	(명)	%	(명)	
1. 식비(외식비포함)	17.7	(292)	15.5	(294)	-2.2
2. 주거 관리비	4.0	( 66)	2.7	( 52)	-1.3
3. 기기/집기	0.8	( 13)	0.8	( 15)	0.0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	( 29)	1.9	( 37)	0.1
5. 보건/의료비	1.6	( 27)	1.6	( 30)	0.0
6. 교육/보육비	44.6	(735)	48.8	(929)	4.2
7. 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5.0	( 82)	3.5	( 67)	-1.5
8. 교통비/통신비	0.8	( 13)	0.9	( 18)	0.1
9. 개인유지비	7.0	(116)	7.7	(147)	0.7
10. 금융상품	4.1	( 68)	4.0	( 77)	-0.1
11. 원리금 상환	-	-	11.0	(209)	-
12. 이전지출	0.7	( 12)	0.9	( 18)	0.2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 8)	0.1	( 1)	-0.4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187)	0.4	( 8)	-10.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II-4-4〉와 같이 가구 특성에 따른 부담 비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교육/보육비, 원리금 상환, 식비 순으로 부담을 느낀 반면, 외벌이 가구는 교육/보육비, 식비, 원리금 상환, 개인 유지비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와 원리금 상환을 부담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반면, 식비, 주거/관리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를 부담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 하인 경우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37.3%이고 식비에 대한 부담이 22.9%인 반면,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52.1%이고 식비에 대한 부담이 11.5%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및 보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4-4〉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부담되는 항목 없음
	식비	주거/기기/관리	가기/집기	피복	보건/의료	교육/보육	여가 및 문화생활	교통/통신	개인유지	금융상품	원리금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15.5	2.7	0.8	1.9	1.6	48.8	3.5	0.9	7.7	4.0	11.0	0.9	0.1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9	3.0	0.9	2.0	1.5	51.4	2.7	0.9	6.5	3.5	13.1	1.3	0.1	0.1
	외벌이	17.6	2.5	0.7	1.9	1.6	46.7	4.2	1.0	8.7	4.5	9.3	0.7	0.0	0.7
	$\chi^2$	29.7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9	5.2	0.0	2.0	2.6	37.3	5.2	0.7	11.1	3.3	8.5	0.7	0.0	0.7
	300~399만원	17.3	2.9	1.2	2.9	2.4	43.5	3.7	1.4	9.4	4.7	10.0	0.6	0.0	0.0
	400~499만원	15.5	2.5	0.4	1.6	0.2	53.2	3.3	0.8	7.2	3.7	10.7	0.4	0.0	0.4
	500~599만원	14.1	2.6	0.9	0.9	2.3	51.9	3.5	1.2	6.3	3.5	11.5	0.9	0.0	0.6
	600만원 이상	11.5	2.0	1.0	2.0	1.2	52.1	2.9	0.5	6.1	4.4	13.0	2.2	0.2	0.7
	$\chi^2$	75.726*													
총 자녀수	1명	15.5	3.6	1.1	2.3	1.5	38.6	4.1	1.2	11.5	4.1	14.4	1.1	0.2	0.9
	2명	13.8	2.3	0.5	1.8	1.7	53.2	3.9	0.7	6.6	4.5	9.8	1.0	0.0	0.2
	3명이상	22.0	2.0	1.2	1.6	1.2	58.4	0.8	1.2	2.4	2.4	6.7	0.4	0.0	0.0
	$\chi^2$	92.23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4-5〉와 같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출하는 비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가구의 25.6%는 교육/보육비, 25%는 금융상품, 17.6%는 원리금 상환, 15.9%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 7.2%는 식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에 차이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 우선 지출 비목에는 차이가 보였는데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2.5%가 교육/보육비, 19.2%가 금융상품, 13.3%가 여가 및 문화생활비, 9.4%가 식비를 선택하여 현재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 투자 및 금융투자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 30%가 금융상품에, 20%가 교육/보육비, 16.7%가 여가 및 문화생활비, 16.4%가 원리금 상환, 6.1%를 응답하여 총 자녀가 3명인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II-4-5〉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단위 : %(명)

구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계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파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전체	7.2	1.4	1.1	1.4	0.5	25.6	15.9	0.2	3.3	25.0	17.6	0.4	0.2	0.3	100.0 ( 1,902)
맞벌이	6.0	1.5	1.1	1.5	0.7	25.7	14.8	0.2	3.0	23.9	20.7	0.5	0.1	0.2	100.0 ( 856)
외벌이	8.2	1.2	1.1	1.2	0.4	25.5	16.7	0.2	3.5	25.8	15.1	0.3	0.3	0.3	100.0 ( 1,046)
	$\chi^2$ 16.354														
299만원 이하	9.8	2.6	1.3	1.3	1.3	23.5	16.3	0.0	2.6	28.8	11.8	0.0	0.0	0.7	100.0 ( 153)
300~399만원	8.0	1.4	1.0	1.2	0.2	27.5	14.1	0.4	3.9	25.5	15.7	0.4	0.2	0.6	100.0 ( 510)
400~499만원	7.2	1.4	0.6	1.4	0.4	27.0	16.1	0.4	3.1	24.5	16.9	0.2	0.4	0.2	100.0 ( 485)
500~599만원	6.6	1.4	1.7	2.0	0.6	25.1	16.1	0.0	3.7	24.2	18.2	0.3	0.0	0.0	100.0 ( 347)
600만원 이상	5.7	0.7	1.2	1.0	0.7	22.9	17.4	0.0	2.7	24.1	22.6	0.7	0.2	0.0	100.0 ( 407)
	$\chi^2$ 43.912														
1명	6.1	1.7	1.4	0.9	0.9	20.0	16.7	0.5	4.7	30.0	16.4	0.3	0.3	0.3	100.0 ( 660)
2명	7.4	1.4	1.0	1.4	0.4	27.6	16.0	0.0	2.7	23.1	18.1	0.5	0.1	0.2	100.0 ( 987)
3명이상	9.4	0.4	0.8	2.4	0.0	32.5	13.3	0.4	2.0	19.2	18.8	0.0	0.4	0.4	100.0 ( 255)
	$\chi^2$ 53.95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III

##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의견 및 요구

- 01 아동수당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02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 03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 Ⅲ.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의견 및 요구

3장에서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2019년 들어 주로 변화된 육아 가구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 지원 정책과 세제 지원 변화 등에 관한 육아 가구의 인지와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육아 가구의 선호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선 요구 등을 정리하였다.

#### 1. 아동수당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본 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인 2019년 5월 기준 아동수당은 만6세 이하 모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편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수당 수혜율은 100%라고 봐야하는 상황이다<sup>19)</sup>. 아동 수당을 받은 육아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을 주로 활용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식비(29.0%), 교육/보육비(24.1%), 저축 등 금융상품(21.3%) 순이었으며, 2순위 응답 결과는 개인유지비(18.1%), 식비(16.1%), 교육/보육비(15.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식비와 교육/보육비에 아동수당을 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무상 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를 감안할 때 아동 수당이 사교육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1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보육비에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42)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경향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녀가 많을수록 1순위 응답 기준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19) 본 연구의 표본은 2012년생(만7세, 초등1학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원표본 가구에서 2012년생이 막내 자녀인 경우가 발생하여, 아동수당 미수령 가구가 33가구 존재함.

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교육/보육비에 지출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순위 응답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유지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보육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1〉 아동 수당의 활용처: 자녀수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1,615)	(1,615)	(531)	(531)	(859)	(859)	(225)	(225)
식비(외식비포함)	29.0	16.1	25.2	18.5	29.6	15.1	36.0	14.2
피복비(의류및신발)	2.8	9.2	2.1	7.5	2.6	9.5	5.8	11.6
보건/의료비	2.9	6.0	3.4	6.2	2.7	6.8	2.7	2.7
교육/보육비	24.1	15.4	20.3	11.7	26.3	16.3	24.4	20.9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6	14.2	7.0	14.7	5.4	14.1	3.6	13.3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3.7	18.1	19.0	20.7	11.6	17.7	9.3	13.8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집 보험, 저축 등)	21.3	9.5	22.6	8.3	21.5	10.5	17.3	8.9
기타	0.4	0.3	0.4	0.2	0.3	0.2	0.9	0.9
무응답	0.0	11.1	0.0	12.2	0.0	9.8	0.0	13.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아동수당의 사용처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로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1순위 응답 45.0%, 2순위 응답 13.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1순위 응답 기준 28.1%, 저축 등 금융상품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26.4%였다. 이때,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긴 했으나, 그 비중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비에 활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고 교육/보육비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가구소득이 300~399만원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 구간과 비교할 때 다소 특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식비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나 그 비중이 27.9%에 그치고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18.8%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표 III-1-2〉 아동 수당의 활용처: 가구소득별

단위 : %(명)

구분	가구소득별									
	299만원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129)	(129)	(437)	(437)	(403)	(403)	(297)	(297)	(349)	(349)
식비(외식비포함)	45.0	13.2	27.9	19.0	30.3	16.4	30.0	11.4	22.3	17.2
피복비(의류및신발)	1.6	10.9	3.4	8.7	2.7	8.9	2.4	10.1	3.2	8.6
보건/의료비	2.3	7.0	2.7	7.6	3.0	5.5	3.7	4.4	2.6	5.7
교육/보육비	21.7	17.1	21.3	11.9	23.8	19.9	24.9	15.5	28.1	14.0
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5.4	9.3	4.8	12.6	5.2	14.1	5.4	17.5	7.4	15.2
개인유지비(생활용품포함)	11.6	18.6	18.8	18.1	12.7	17.9	13.8	22.2	9.5	14.9
저축 등 금융상품	12.4	12.4	20.4	11.7	21.8	6.7	19.9	6.1	26.4	12.0
기타	0.0	0.8	0.7	0.5	0.5	0.2	0.0	0.0	0.6	0.3
무응답	0.0	11.1	0.0	10.9	0.0	10.1	0.0	10.4	0.0	12.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지원에 따른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간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3.3%,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3%로,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응답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모든 소득 구간에서 평균 3.5점으로 동일하였다. 이 외에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녀수나 자녀 구성, 맞벌이 여부 등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2.4	14.1	32.0	33.3	18.3	3.5	100.0	(1,61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9	15.5	34.1	24.0	22.5	3.5	100.0 ( 129)
	300~399만원	1.8	13.7	34.1	33.9	16.5	3.5	100.0 ( 437)
	400~499만원	2.2	12.4	30.5	38.0	16.9	3.5	100.0 ( 403)
	500~599만원	2.4	13.8	33.7	33.0	17.2	3.5	100.0 ( 297)
	600만원 이상	2.6	16.0	28.9	30.7	21.8	3.5	100.0 ( 349)
$\chi^2/F$	17.944					0.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하지만 가구의 생활비 지출 수준별로는 생활비 지출 수준이 적은 가구일수록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 생활비 지출액이 1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매우 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27.8%에 달하며 평균 점수도 3.7점이었다. 반면 가구 생활비 지출액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3.4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4〉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단위 : %(명)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2.4	14.1	32.0	33.3	18.3	3.5	100.0	(1,615)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9	14.8	25.9	29.6	27.8	3.7	100.0 ( 108)	
	200~299만원	1.7	12.0	33.8	34.3	18.2	3.6	100.0 ( 648)	
	300~399만원	2.6	13.2	29.7	39.4	15.1	3.5	100.0 ( 536)	
	400만원 이상	3.4	19.2	34.4	22.3	20.7	3.4	100.0 ( 323)	
$F/x^2$		42.230***					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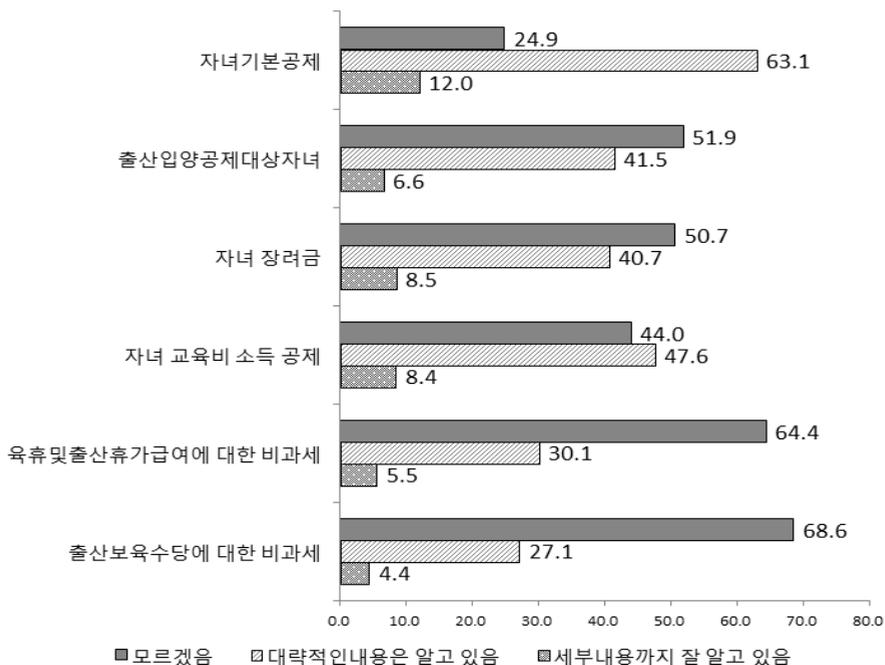
\*  $p < .05$ , \*\*\*  $p < .001$ .

한편,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정책 인지 자체가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세제 지원 혜택 내용별로는 자녀 기본 공제 지원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녀 기본 공제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1%였으며, 세부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2.0%였다. 자녀 기본 공제 제도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아 대략적인 내용은 안다는 응답이 47.6%, 세부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8.4%였다. 반면, 출산 입양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51.9%에 달했으며, 자녀 장려금 세제 혜택을 안다는 응답도 50.7%로 절반가량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64.4%,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68.6%에 달해 2/3가량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아 가구가 자신이 소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을 중심을 제도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공제 제도에 비해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지가 전반적으로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1-1]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세부 세제 지원 혜택별 정책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자녀 기본 공제 제도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24.9%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1%, 세부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12.0%로, 다른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 기본 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기본 공제 제도의 세부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구생활비 지출 수준에 따라서도 지출 비용이 높을수록 자녀 기본 공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자녀 기본 공제(20)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79.0%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녀 기본 공제의 지원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가구는 914가구 중 15.6%로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만큼 수혜율이 낮은 편이나, 지원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6%로 자녀 기본 공제에 대해 지원금에 대한 인지는 높았다.

자녀 장려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31.1%로, 이 경우는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욱 높아져 59.8%에 달했다. 이는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응답은 48%로, 지원 금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한편, 소득 공제 측면에서 지원과는 약간 다른 비과세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은 13.6%, 지원 금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6%로, 세제 지원 정책 중 가장 낮은 수혜율을 보인 반면 지원 금액에 대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인 것에 기인하며, 신청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신청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세제혜택 수혜여부 및 지원금 수준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난 1년간 수혜여부		지원금 인지여부			
	수혜 받은 적이 있음	계	지원 금액 알고 있음	지원받았으나, 구체적 금액은 모름	계	
자녀 기본 공제	79.0	100.0 (1,429)	30.0	70.0	100.0	(1,129)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	100.0 ( 914)	40.6	59.4	100.0	( 143)
자녀 장려금	31.1	100.0 ( 937)	59.8	40.2	100.0	( 291)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48.0	100.0 (1,065)	33.9	66.1	100.0	( 511)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13.6	100.0 ( 677)	68.6	20.2	100.0	( 5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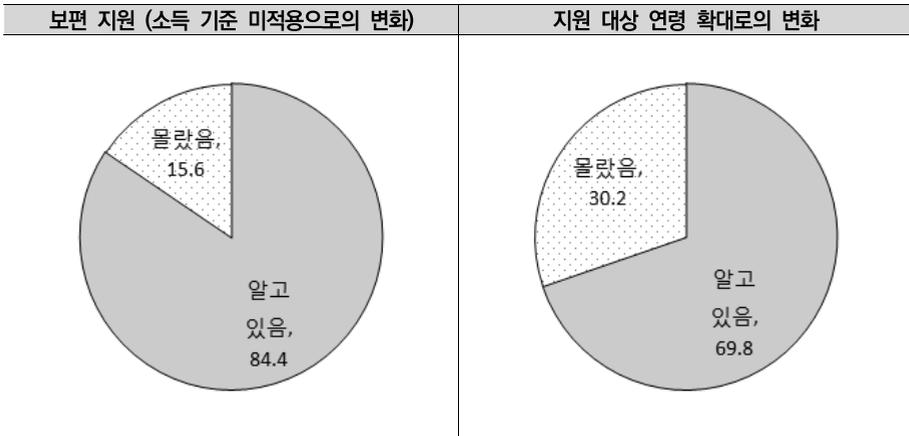
20) 소득공제 기준 기간은 2018년 1월 ~2018년 12월에 해당함.

## 2.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이 절에서는 2019년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항과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2019년 육아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 변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4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이 가구소득(혹은 재산수준)에 무관하게 만6세(2019년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아) 모든 가구에 대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4%로, 15.6%의 가구들은 정책 변화를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9년 9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만 7세(2019년 기준 2012년생 이후 출생아)까지 확대되었는데, 조사 시점인 5월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69.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III-2-1]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인지

단위 : %



주: 총 1,902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그림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인지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육아 가구의 경우에 이러한 지원 제도의 확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2019년 9월부터 확대된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초등1학년 자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7세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어떠한 경로로 이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5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이웃이나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줬다는 응답이 20.2%,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응답이 10.2%였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응답이 높고,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III-2-1〉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제도 변경 인지 경로

단위 : %(명)

구분	아동수당 제도 변경 인지 경로							계	
	공공기관 의 공고문을 통해서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웃이 나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줌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서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해서	기타			
전체	10.2	4.3	20.2	56.7	7.8	0.8	100.0	(1,32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6	3.0	20.6	60.0	6.4	0.5	100.0	( 607)
	외벌이	10.7	5.4	19.8	54.0	9.0	1.1	100.0	( 721)
	$\chi^2$	11.5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6	3.2	23.2	46.3	11.6	3.2	100.0	( 95)
	300~399만원	11.5	6.5	19.1	52.2	10.1	0.6	100.0	( 356)
	400~499만원	10.8	3.8	20.8	55.0	8.8	0.9	100.0	( 342)
	500~599만원	10.3	3.3	21.4	58.0	6.6	0.4	100.0	( 243)
	600만원 이상	6.8	3.4	18.8	66.4	3.8	0.7	100.0	( 292)
	$\chi^2$	37.4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이 58.4%,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1%, 축소되어야한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아동 수당 지원 연령 확대 시 확대 연령은 평균 11.1세까지 확대되어야한다고 응답해 아동 수당이 초등학교 대다수의 시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가구의 자녀 구성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유아 자녀만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2〉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대상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시	축소시	계		
		확대	현행 유지	축소	연령(평균)	연령(평균)			
전체		39.1	58.4	2.5	11.1	4.7	100.0	(1,902)	
자녀 구성	1명	영아만	38.7	59.7	1.7	11.1	5.2	100.0	( 300)
		유아만	40.5	57.1	2.3	10.8	5.7	100.0	( 259)
		초등이상만	33.7	63.4	3.0	10.4	4.3	100.0	( 101)
	2명	영아만	36.3	62.1	1.6	11.0	5.5	100.0	( 124)
		유아만	44.3	54.3	1.4	11.2	5.0	100.0	( 70)
		영아+유아	37.4	61.9	0.7	11.3	6.0	100.0	( 289)
		영아+초등이상	39.8	55.7	4.5	11.0	5.0	100.0	( 88)
		유아+초등이상	38.8	58.0	3.3	11.1	3.9	100.0	( 307)
		초등이상만	34.9	56.9	8.3	11.7	4.2	100.0	( 109)
	3명 이상	영유아만	42.0	58.0	0.0	11.5	0.0	100.0	( 50)
		영유아+초등이상	46.1	52.2	1.7	10.9	5.7	100.0	( 178)
		초등이상만	37.0	55.6	7.4	11.0	4.0	100.0	( 27)
$\chi^2/F$		34.481*			0.8	1.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액에 따라서는 영유아 양육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확대되어야하는 연령은 전반적으로 평균 11세 전후라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3〉 가구 소비지출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대상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시 연령(평균)	축소시 연령(평균)	계	
	확대	현행 유지	축소				
전체	39.1	58.4	2.5	11.1	4.7	100.0	(1,902)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44.4	52.4	3.2	11.0	4.8	100.0 ( 347)
	50~99만원	37.7	60.6	1.6	11.1	4.7	100.0 ( 734)
	100~199만원	37.4	60.8	1.8	10.9	5.6	100.0 ( 497)
	200만원 이상	51.7	47.1	1.1	11.6	5.0	100.0 ( 87)
	$F/x^2$	14.829*			1.1	0.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한편, 아동 수당 지원을 돌봄 취약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37.6%가 차등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해, 62.4%는 현행처럼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등 지원하게 될 경우 지원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고, 한부모가족(16.2%), 다자녀 가구(11.9%), 조손가족(10.5%)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런데 이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37.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본인의 혜택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들의 선호가 형성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2-4〉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추가 지원 대상

단위 : %(명)

구분	돌봄취약 추가지원 필요	차등 지원시 최우선 지원 대상					계	
		저소득 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자녀 가구	기타		
전체	37.6	60.7	16.2	10.5	11.9	0.7	100.0	(715)
총 자녀수	1명	36.2	61.1	19.7	11.7	6.7	0.8	100.0 (239)
	2명	37.8	65.1	15.8	10.2	8.0	0.8	100.0 (373)
	3명이상	40.4	43.7	9.7	8.7	37.9	0.0	100.0 (103)
	$x^2/F$	0.7	80.65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 현행유지가 56.9%, 축소가 0.4%로, 육아 가구들은 아동 수당의 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순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아동 수당 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육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인 점을 감안해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아동 수당 지원금이 확대 혹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1회 기준 최대 몇 만원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22만4천원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지원금보다 2배 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중이 줄어들고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에 따라 확대와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1회 기준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22만원 정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 가구 특성별 아동수당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지원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아동수당 지원 금액			1회 기준 최대 ( )만원	계	
	확대	현행 유지	축소			
전체	42.7	56.9	0.4	22.4	100.0	(1,9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4.9	45.1	0.0	23.6	100.0 ( 153)
	300~399만원	46.1	53.5	0.4	22.5	100.0 ( 510)
	400~499만원	40.8	58.8	0.4	22.0	100.0 ( 485)
	500~599만원	42.7	57.1	0.3	22.2	100.0 ( 347)
	600만원 이상	36.4	63.1	0.5	22.2	100.0 ( 407)
	$\chi^2/F$	19.590*			0.5	
총 자녀수	1명	46.2	53.6	0.2	22.8	100.0 ( 660)
	2명	39.2	60.2	0.6	22.2	100.0 ( 987)
	3명이상	47.5	52.5	0.0	22.1	100.0 ( 255)
	$\chi^2/F$	13.339**			0.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한편, 2019년 아동 수당 지원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세제 지원 혜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육아 가구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세법 개정으로 아동 수당을 받는 만6세 이하(2013년 이후 출생아)는 자녀 세액 공제(기본 공제 대상 자녀)를 중복 수혜 할 수 없어진 제도 변화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불과 22.0%에 그쳤다. 즉, 앞서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 중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84.4%가, 지원 연령의 확대에 대해서는 69.8%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세제 혜택의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육아 가구가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법 개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공제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육아 가구들의 체감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직접적인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이 세제 지원 정책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투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한편, 인지도 자체가 높지는 않으나 아동수당-세제 지원 중복 수혜 폐지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에 대해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 인지 경로와 유사하게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응답이 17.2%, 이웃이나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줬다는 응답이 17.0%였다.

〈표 III-2-6〉 가구 소비지출별 세법 개정에 따른 중복수혜 폐지 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구분	중복수혜 폐지에 대해 알고 있음	아동수당-세액공제 중복수혜 폐지 인지 경로							기타	계
		공공기관의 공고문을 통해서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웃이나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줌	뉴스 보도 등 TV 매체를 통해서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체	22.0	17.2	6.5	17.0	50.0	6.2	3.1	100.0	(418)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1.3	24.3	4.1	21.6	45.9	2.7	1.4	100.0	( 74)
	50~99만원	22.6	19.9	8.4	22.3	41.0	5.4	3.0	100.0	(166)
	100~199만원	22.9	10.5	6.1	9.6	59.6	9.6	4.4	100.0	(114)
	200만원 이상	18.4	18.8	0.0	12.5	50.0	12.5	6.3	100.0	( 16)
	$F/x^2$	0.4	26.56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아동 수당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의 중복 수혜 제도가 폐지된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18.7%,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4%로 24.1%의 육아 가구에 정책 변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14.8%, 반대하는 편이

라는 의견이 19.5%로 34.3%가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찬성보다 반대 입장이 다소 높은 상황이었다. 자녀 구성에 따라서,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가 영유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육아 가구에 대한 정책 의견 조사에 있어서 본인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현상이 투영된 결과라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 수당 지원 확대에 대한 인지가 높은 반면 세제 지원 혜택 축소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2-7〉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확대-세액공제 중복수혜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분		아동수당-세액공제 중복수혜			금지에 대한 의견		평균 점수	계			
		절대 반대	반대하는 편	보통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전체		14.8	19.5	41.6	18.7	5.4	2.8	100.0	(1,902)		
자녀 구성	1명	영아만	12.7	18.0	46.0	20.0	3.3	2.8	100.0	( 300)	
		유아만	17.4	21.2	38.6	17.8	5.0	2.7	100.0	( 259)	
		초등이상만	9.9	12.9	41.6	27.7	7.9	3.1	100.0	( 101)	
	2명	영아만	8.9	20.2	47.6	15.3	8.1	2.9	100.0	( 124)	
		유아만	11.4	28.6	42.9	15.7	1.4	2.7	100.0	( 70)	
		영아+유아	14.9	22.1	38.8	19.7	4.5	2.8	100.0	( 289)	
		영아+초등이상	14.8	19.3	40.9	17.0	8.0	2.8	100.0	( 88)	
		유아+초등이상	17.6	17.3	43.0	18.9	3.3	2.7	100.0	( 307)	
	3명 이상	초등이상만	11.9	15.6	39.4	20.2	12.8	3.1	100.0	( 109)	
		영유아만	10.0	30.0	42.0	16.0	2.0	2.7	100.0	( 50)	
		영유아+초등이상	21.9	18.0	39.3	15.2	5.6	2.6	100.0	( 178)	
			초등이상만	11.1	18.5	33.3	14.8	22.2	3.2	100.0	( 27)
	$\chi^2/F$		78.454**					2.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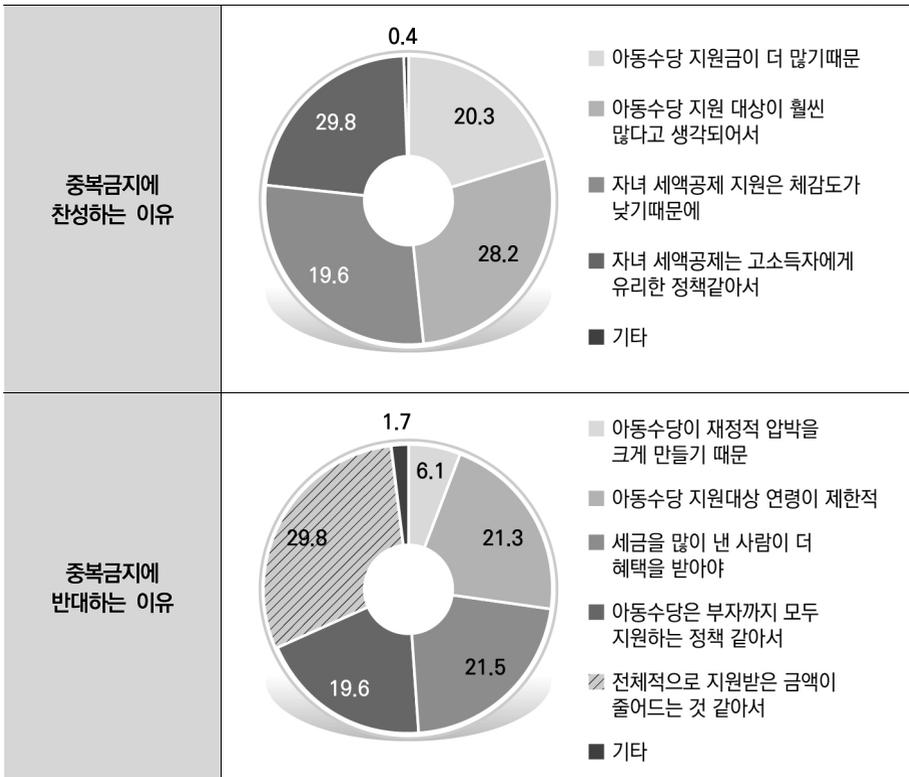
아동 수당 지원이 확대되면서 세제 혜택의 중복 수혜가 금지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 그 사유는 자녀 세액 공제 지원은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8.4%로 가장 많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8.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녀 세액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 같아서라는 의견도 22.7%에 달했으며, 아동수당 지원금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0.3%로, 중복 수혜 금지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는 다양하게 비슷한 비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중복 수혜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21.5%,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제한적이기때문이라는 응답이 21.3%였다. 이 외에 아동수당은 부자까지 모두 지원하는 정책 같아서라는 응답이 19.6%, 아동수당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에 그쳤다. 즉, 육아 가구들은 재정적 여력이나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할 때 본인의 수혜여부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2] 아동수당-세제 지원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찬반 사유

단위 : %



주: 찬성하는 경우 458명, 반대하는 경우 652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의 확대 정책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지도는 20.5%로, 아동수당-기본 공제 대상 자녀 세제 지원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인지도(22.0%)에 비해서도 약간 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녀 장려금 지원금의 확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육아 가구의 51.4%가 찬성(찬성하는 편+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중복 수혜 금지에 비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는 육아 가구들이 본인의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는 것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찬성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수혜 집단에 보다 높은 정책 지지도를 보이는 현상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총 자녀수에 따라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이 높은 현상에 기인한 차이로 보여진다.

〈표 III-2-8〉 가구특성별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 확대에 대한 인지 및 의견

단위 : %(명), 점

구분	인지여부: 알고있었음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평균 점수	
		절대반대	반대하는 편	보통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전체	20.5	2.9	6.8	38.9	33.6	17.8	3.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6.8	2.6	1.3	28.8	36.6	30.7	3.9
	300~399만원	20.4	2.2	5.7	34.7	35.5	22.0	3.7
	400~499만원	21.6	3.5	7.2	40.6	35.9	12.8	3.5
	500~599만원	15.9	2.0	10.1	43.2	32.3	12.4	3.4
	600만원 이상	20.6	3.9	7.1	42.0	28.7	18.2	3.5
	$\chi^2/F$	2.2	63.499***					11***
총 자녀 수	1명	18.3	2.0	4.8	37.4	35.5	20.3	3.7
	2명	20.9	2.9	8.2	40.0	33.5	15.3	3.5
	3명이상	24.3	5.1	6.7	38.0	29.4	20.8	3.5
	$\chi^2/F$	2.1	22.597**					6.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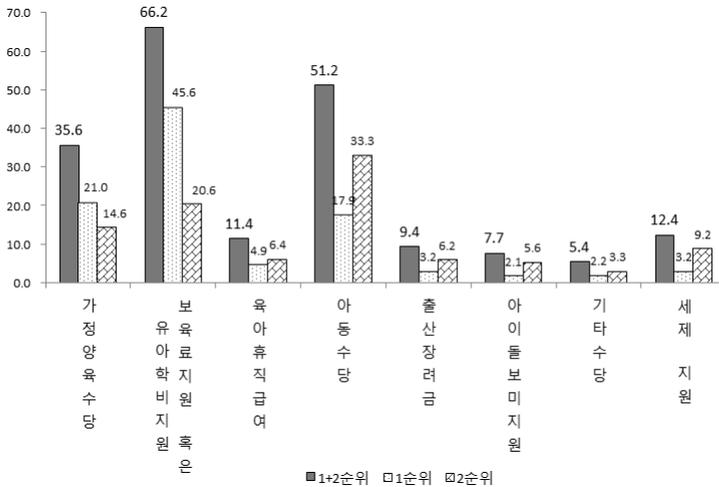
\*\*  $p < .01$ , \*\*\*  $p < .001$ .

### 3.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육아 가구가 생각하는 정책 우선 순위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 중에서 육아 가구들이 양육비용 절감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이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51.2%에 달했다. 다음으로 가정 양육수당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35.6%, 세제 지원 12.4%, 육아휴직 급여 11.4% 순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긴 하나,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1.0%로 다음을 차지했다. 즉, 다수의 육아 가구가 최우선으로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를 1순위로 응답한 후, 아동수당을 2순위로 응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육아 가구들은 가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비용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양육비용 경감에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3-1] 양육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단위 : %



주: 1,902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향후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원의 확대가 49.5%로 매우 높은 지지도 를 보였다. 이 또한 1순위 응답에서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에 응답한 후 2순위 응답에서 아동수당 지원을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 순위+2순위 응답 기준 아이돌보미 지원이 축소되어야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 장 높고, 출산 장려금 28.8%, 세제 지원 28.3%, 육아휴직 급여 26.9% 순으로 응 답되었다.

〈표 III-3-1〉 향후 확대/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단위 : %(명)

구분	향후 확대 혹은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아동 수당	출산 장려금	아이 돌보미 지원	기타 수당	세제 지원	모름/ 무응답			
확대 필요	1+2순위	30.5	51.6	13.0	49.5	11.8	17.7	9.5	15.7	0.0	100.0	(1,902)
	1순위	18.0	30.8	7.6	21.3	5.7	6.9	4.5	5.3	0.0	100.0	(1,902)
	2순위	12.6	20.9	5.4	28.1	6.2	10.8	5.0	10.4	0.7	100.0	(1,902)
축소 필요	1+2순위	20.1	12.0	26.9	12.4	28.8	31.9	19.8	28.3	5.4	100.0	(1,902)
	1순위	12.7	6.9	14.6	6.6	15.9	15.2	9.3	13.4	5.4	100.0	(1,902)
	2순위	7.4	5.1	12.3	5.8	12.9	16.7	10.6	14.9	14.4	100.0	(1,90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 이를 보이는데, 맞벌이 가구들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외벌이 가구들은 아동 수당의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III-3-2〉 가구특성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1+2순위

단위 : %(명)

구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아동 수당	출산 장려금	아이 돌보미 지원	기타 수당	세제 지원		
전체	30.5	51.6	13.0	49.5	11.8	17.7	9.5	15.7	100.0	(1,902)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26.1	맞벌이 50.8	맞벌이 17.9	맞벌이 46.3	맞벌이 10.9	맞벌이 22.0	맞벌이 8.4	맞벌이 17.2	100.0	( 856)
	외벌이 34.2	외벌이 52.3	외벌이 9.0	외벌이 52.1	외벌이 12.6	외벌이 14.2	외벌이 10.3	외벌이 14.4	100.0	(1,04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반대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 정책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구들이 출산 장려금, 세제 지원 등에 높은 비중을 둔 반면, 외벌이 가구들은 아이돌보미 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특이한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반대로 아이돌보미 지원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도 29.7%로 높게 나타났다.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맞벌이 가구들이 1순위 응답에서 출산장려금을, 2순위 응답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 혹은 세제 지원에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육아 가구들이 본인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나 아이돌보미 지원 제도의 정책 수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서조차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을 서비스 지원 정책 혹은 세제 지원 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점이라 할 것이다.

〈표 III-3-3〉 가구특성별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1+2순위

단위 : %(명)

구분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아동 수당	출산 장려금	아이 돌보미 지원	기타수 당	세제 지원	모름/ 무응답		
전체	20.1	12.0	26.9	12.4	28.8	31.9	19.8	28.3	5.4	100.0	(1,902)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21.5	맞벌이 12.5	맞벌이 23.0	맞벌이 13.8	맞벌이 30.1	맞벌이 29.7	맞벌이 20.2	맞벌이 29.9	맞벌이 5.6	100.0	( 856)
	외벌이 19.0	외벌이 11.7	외벌이 30.0	외벌이 11.2	외벌이 27.7	외벌이 33.7	외벌이 19.5	외벌이 27.0	외벌이 5.3	100.0	(1,04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결과임.





# IV

##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 0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 02 양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03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격차와 소득탄력성
- 04 소결



## IV.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이 장에서는 1차년도(2018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소득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격차에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주된 이유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차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1차년도 조사 자료의 응답자 특성은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에 이미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 Part II의 응답자 특성 부분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는 생략하였다. 다만,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은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 장의 분석에서는 상대적 가구소득의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로 나누어,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양육비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가구소득분위별로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표 IV-1-1과 그림 IV-1-1 참조). 가구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74만7천원이었으며,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186만5천원으로 가구소득 기준 1분위에 비해 약 2.5배에 달하는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 기준 7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총 양육비용이 134만4천원으로, 가구소득이 더 많은 가구에 비해서도 평균 총양육비용이 더 많다는 점인데, 금액의 차이가 특기할 만큼 크지 않고 영유아 양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표본 특성이 차이로 보여진다. 즉 7분위 가구 내에서 다자녀 가구 및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소득 최상위 분위인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9분위 이하 가구들과는 총 양육비용 뿐 아니라 영유아 양육비용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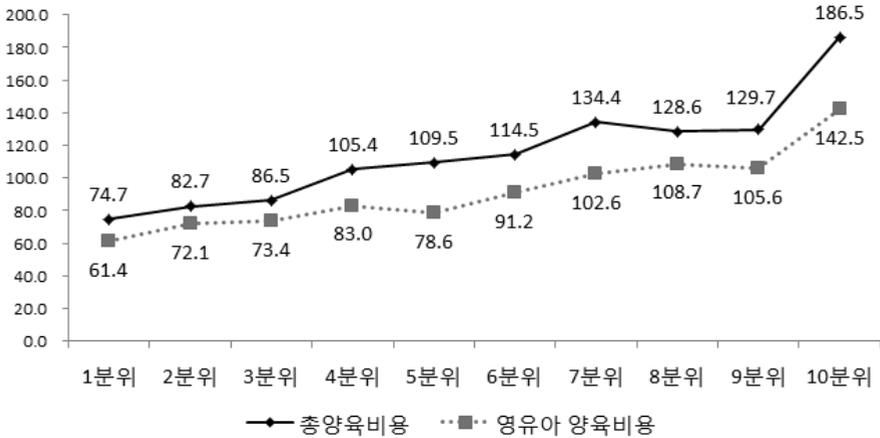
〈표 IV-1-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양육비용	74.7	82.7	86.5	105.4	109.5	114.5	134.4	128.6	129.7	186.5
영유아양육비용	61.4	72.1	73.4	83.0	78.6	91.2	102.6	108.7	105.6	142.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그림 IV-1-1]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평균) 차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이에 총 자녀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 분위별 총양육비용(평균)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도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가구소득이 4분위에 속한 가구들은 두자녀 가구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다소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한자녀 가구보다는 두자녀 가구가 약간 더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중이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만, 중간 소득 구간에서 자녀수는 가구소득과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총 양육비용은 동일한 자녀수를 가진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기준 1분위 가구와 10분위 가구를 비교할 때 약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같은 소득 분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2배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총양육비용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저소득 다자녀 가구가 특히 양육비용의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V-1-2〉 가구소득 분위 및 총 자녀수별 총양육비용(평균)

단위 : 만원, 명

구분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74.7 (165)	82.7 (165)	86.5 (165)	105.4 (165)	109.5 (165)	114.5 (165)	134.4 (165)	128.6 (165)	129.7 (165)	186.5 (163)	
총 자 녀 수	1명	54.3 (72)	58.7 (76)	64.7 (81)	72.3 (40)	79.2 (57)	78.1 (76)	95.1 (47)	102.8 (58)	103.3 (79)	146.6 (52)
	2명	86.1 (70)	99.3 (82)	100.1 (65)	110.3 (106)	111.9 (87)	137.9 (69)	143.5 (97)	133.9 (89)	141.4 (74)	188.2 (79)
	3명이상	103.9 (23)	148.9 (7)	132.7 (19)	147.4 (19)	181.5 (21)	172.2 (20)	180.3 (21)	185.6 (18)	231.2 (12)	246.9 (3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분석에 활용된 빈도 수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가구소득 분위와 총양육비용 분위기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양육비용도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포착된다. 즉, 총양육비용이 1분위에 속하여 양육비용 지출이 적은 가구의 비중이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총양육비용이 10분위로 지출비용이 큰 가구는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V-1-3〉 가구소득분위 \* 총양육비용 분위별 분포

단위 : %

구분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 양 육 비 용 분 위	1분위	28.5	20.0	18.2	4.9	6.1	6.1	3.0	7.3	4.9	1.2
	2분위	17.0	17.0	10.9	12.7	7.3	5.5	7.3	9.1	11.5	1.8
	3분위	13.9	15.2	17.6	7.3	7.9	12.1	5.5	9.7	7.3	3.6
	4분위	9.7	8.5	11.5	9.7	15.8	14.6	9.1	5.5	9.7	6.1
	5분위	8.5	11.5	8.5	15.2	15.2	13.9	7.9	4.9	7.9	6.7
	6분위	8.5	9.1	12.1	15.8	11.5	6.1	12.1	9.1	10.3	5.5
	7분위	7.3	6.1	11.5	15.8	10.3	12.1	9.1	9.1	6.7	12.1
	8분위	1.8	7.3	4.2	9.7	12.1	12.7	16.4	14.6	11.5	9.7
	9분위	3.0	4.2	3.6	6.1	9.7	9.7	17.0	17.0	16.4	13.3
	10분위	1.8	1.2	1.8	3.1	4.3	7.4	12.9	14.1	14.1	39.3

주: 1) 총양육비용 분위별 평균값은 1분위부터 34.3만원, 2분위 54.3만원, 3분위 67.8만원, 4분위 80.7만원, 5분위 94.6만원, 6분위 108.6만원, 7분위 125만원, 8분위 145.6만원, 9분위 176.9만원, 10분위 265.6만원.  
 2) 가로행의 합이 100%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비목별 총양육비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식비의 경우 1분위 가구소득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식비가 약간 작긴 하지만, 9분위 소득 구간의 식비 지출 평균도 20만6천원에 그쳐 가구소득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보건 의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반면,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지출 금액이 일관되게 정비례 양상을 보였는데, 1분위 가구소득 구간에 속한 가구는 22만6천원을 지출하는데 그쳤으나,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76만2천원을 지출하여 3.4배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분위 가구소득 구간에는 다자녀 가구 비중이 높긴 하지만, 식비나 보건의료비의 격차를 고려할 때 고소득 가구의 총 양육비 지출이 많은 이유가 교육보육비에 대한 많은 지출에 기인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즉, 교육보육비나 여가문화생활비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사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교육보육비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될 위험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1-4〉 가구소득분위 \* 비목별 총양육비용(평균)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74.7	82.7	86.5	105.4	109.5	114.5	134.4	128.6	129.7	186.5	
비 목 별	식비	19.4	20.9	19.6	25.0	27.2	25.1	28.5	25.6	20.6	32.5
	보건의료비	3.2	3.6	3.9	4.7	4.1	5.0	5.6	4.4	4.4	5.0
	교육보육비	22.6	25.0	24.5	30.4	33.9	34.4	44.7	50.1	50.8	76.2
	여가문화생활비	9.9	12.0	14.7	17.2	18.1	19.8	22.9	21.5	24.7	31.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2. 양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서 1절에서는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분위별 양육비용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동일 자료를 활용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다수의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구소득이 양육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분위별로 어떻게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자승법(OLS)과 분위회귀분석<sup>21)</sup> 등이 활용되었다.

### 가. 양육비용 종류에 따른 분위회귀분석 결과

〈표 IV-2-1〉은 가구의 양육비용 결정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총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가구단위의 총 생활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과 비교를 위해 OLS 추정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설명변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분위회귀계수가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중위(50%분위) 수준에서 주로 총 생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비 지출이 많아짐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생활비 지출이 많은 집단에서 연령대별 지출액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가구단위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활비 지출에 대한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생활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자녀수에 따라서 생활비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총 생활비 지출에 대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해당 가구의 총 생활비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탄력성의 크기는 높은 분위, 즉 총 생활비가 많은 집단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10%분위 수준에서는 가

21) 분위회귀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최효미·김길숙·이동하 외(2016)의 p.82~8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총 생활비가 약 0.3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90%분위 수준에서는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약 0.59% 정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두 집단 사이에 약 1.6배 이상의 탄력성 크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1〉 총 생활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총 생활비(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073 *	0.089	0.087	0.073 *	0.066	-0.031
	40대이상	0.104 ***	0.092	0.116 *	0.099 **	0.097 **	0.019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34	0.016	0.061 *	0.042 *	0.027	0.001
	대졸	0.030	-0.005	0.038	0.043 **	0.017	-0.014
	석사이상	0.038	0.021	-0.007	0.009	0.004	0.098
맞벌이여부		-0.015	-0.027	-0.018	-0.011	-0.002	-0.012
가구소득(자연로그)		0.457 ***	0.362 ***	0.434 ***	0.491 ***	0.582 ***	0.588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095 ***	0.157 ***	0.087 ***	0.101 ***	0.071 ***	0.091 ***
	3명이상	0.182 ***	0.150 **	0.192 ***	0.214 ***	0.194 ***	0.196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034 *	-0.085 **	-0.024	-0.026	-0.040 *	-0.027
	3명이상	-0.031	-0.018	-0.052	-0.061	-0.075	0.025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50 ***	-0.013	0.038	0.051 **	0.047 **	0.112 ***
	중소도시	-0.030	-0.111 ***	-0.059 *	-0.043 **	0.000	0.057
상수항		2.753 ***	3.039 ***	2.715 ***	2.550 ***	2.182 ***	2.340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2〉는 가구 수준에서의 총 양육비용 결정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연령과 관련하여, 저분위(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생활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위 수준별 영향력의 크기는 중위(50%분위) 수준에서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맞벌이 여부는 가구단위 양육비용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용 지출액이 큰 집단(높은 분위)일수록 자녀수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수준이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득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총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탄력성의 크기는 75%분위에서 가장 크고, 10%분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75%분위 0.587, 10%분위 0.521), 전반적으로 분위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2〉 총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총 양육비용(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177 ***	0.124	0.171 **	0.212 ***	0.153 *	0.216 **
	40대이상	0.249 ***	0.214	0.268 ***	0.281 ***	0.210 **	0.245 **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42	0.002	0.057	0.095 ***	0.020	-0.024
	대졸	0.059 *	0.000	0.089 **	0.097 ***	0.038	0.046
	석사이상	0.028	-0.102	-0.126	0.015	0.016	0.088
맞벌이여부		0.020	0.027	0.008	-0.002	-0.002	0.023
가구소득(자연로그)		0.506 ***	0.521 ***	0.532 ***	0.528 ***	0.587 ***	0.557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483 ***	0.599 ***	0.497 ***	0.487 ***	0.440 ***	0.395 ***
	3명이상	0.802 ***	0.913 ***	0.851 ***	0.803 ***	0.755 ***	0.690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058 *	-0.139 **	-0.034	-0.060 *	-0.069 *	-0.087 *
	3명이상	-0.045	-0.006	-0.088	-0.092	-0.037	-0.077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76 **	0.071	-0.023	0.056	0.107 **	0.163 ***
	중소도시	-0.018	-0.093	-0.095 **	0.003	0.043	0.083
상수항		0.950 ***	0.386	0.581 **	0.792 ***	0.790 ***	1.152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3〉은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의 연령과 관련하여, 모든 분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50%분위) 수준을 정점으로 그 크기는 분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분위(90%분위)에서는 모의 연령이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 양육비용의 경우와는 달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액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수는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액에 대한 분위별 분석에서는 영유아 자녀수의 영향력이 분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총 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은 분위별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즉 높은 분위에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탄력성의 크기는 75%분위에서 가장 크고, 10% 분위와 25%분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75%분위 0.591, 10%(25%)분위 0.497).

〈표 IV-2-3〉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양육비용 (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176 ***	0.118	0.185 **	0.233 ***	0.144 *	0.046
	40대이상	0.249 ***	0.232 *	0.291 ***	0.301 ***	0.188 **	0.075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39	-0.014	0.060	0.067 *	0.030	-0.014
	대졸	0.055 *	0.006	0.091 **	0.073 **	0.023	0.044
	석사이상	0.026	-0.071	-0.128	0.007	0.010	0.101
맞벌이여부		0.030	0.076	0.040	0.010	0.019	0.054
가구소득(자연로그)		0.500 ***	0.497 ***	0.490 ***	0.531 ***	0.591 ***	0.536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280 ***	-0.304 ***	-0.255 ***	-0.252 ***	-0.291 ***	-0.287 ***
	3명이상	-0.536 ***	-0.572 ***	-0.551 ***	-0.481 ***	-0.528 ***	-0.516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709 ***	0.746 ***	0.727 ***	0.684 ***	0.668 ***	0.594 ***
	3명이상	1.245 ***	1.388 ***	1.299 ***	1.172 ***	1.179 ***	1.141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75 **	-0.025	-0.019	0.066 *	0.155 ***	0.177 ***
	중소도시	-0.018	-0.153 **	-0.087 *	-0.001	0.081 *	0.076
상수항		0.983 ***	0.583	0.744 ***	0.757 ***	0.727 ***	1.431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4〉에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sup>22)</sup>. 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영유아 전체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모의 연령과 관련하여, 고분위(90%분위)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영유아 1인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에 대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의 정도 역시 분위가 증가할수록 그 탄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가구단위 총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1인에 대한 양육비용 역시 그 수준별로

22)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유아 자녀수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함.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4〉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174 ***	0.104	0.174 *	0.220 ***	0.160 *	0.216 **
	40대이상	0.236 ***	0.182	0.263 ***	0.279 ***	0.205 **	0.246 **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41	-0.024	0.073	0.062 *	0.032	-0.046
	대졸	0.058 *	0.005	0.093 **	0.073 **	0.024	0.038
	석사이상	0.037	-0.044	-0.113	0.008	-0.003	0.062
맞벌이여부		0.030	0.066	0.034	0.014	0.014	0.026
가구소득(자연로그)		0.499 ***	0.505 ***	0.497 ***	0.526 ***	0.593 ***	0.542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270 ***	-0.269 ***	-0.246 ***	-0.263 ***	-0.307 ***	-0.324 ***
	3명이상	-0.484 ***	-0.502 ***	-0.465 ***	-0.460 ***	-0.526 ***	-0.527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76 **	-0.014	-0.028	0.071 **	0.154 ***	0.168 ***
	중소도시	-0.021	-0.176 ***	-0.092 *	0.004	0.075 *	0.072
상수항		0.993 ***	0.555	0.773 ***	0.801 ***	0.706 ***	1.259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 나. 영유아 양육비용 비목별 분석결과

지금부터 영유아 전체에 대한 가구 내 양육비용 지출 중 몇 가지 핵심 비목별 지출액에는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2-5〉는 영유아에 대한 식비 지출액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총 자녀수는 많을수록 영유아 식비가 줄어드는 반면, 영유아 자녀수는 많아질수록 영유아에 대한 식비 지출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식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탄력성은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에 대한 식비 지출이 적은 저분위(10%분위)에서는 가구소득 1% 증가가 영유아 식비 약 0.30% 증가를 야기하는 반면, 고분위(90%분위)에서는 가구소득 1% 증가에 영유아 식비는 0.16%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과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피복비 지출 및 문화생활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앞서 제시된 영유아 식비의 결과와 상당

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에 대한 식비 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및 문화생활비 지출의 가구소득탄력성 역시 지출액이 많은 고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피복비의 가구소득탄력성은 저분위(10%분위)에서 약 0.479(가구소득 1% 증가에 영유아 피복비 지출 약 0.48% 증가) 수준인 반면, 고분위(90%분위)에서 약 0.218(가구소득 1% 증가에 영유아 피복비 0.22% 증가) 수준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는 저분위(10%분위)에서의 가구소득탄력성은 0.747(가구소득 1% 증가시 영유아 문화생활비는 약 0.75% 증가) 수준인 반면, 고분위(90%분위)에서의 가구소득탄력성은 0.575(가구소득 1% 증가시 영유아 문화생활비는 약 0.58% 증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5〉 영유아 식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식비(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036	-0.123	-0.037	-0.022	-0.001	-0.077
	40대이상	0.070	-0.097	0.011	0.106	0.032	-0.081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76	0.028	-0.005	0.069	0.051	0.153 ***
	대졸	0.073	-0.107	0.026	0.109	0.069	0.166 ***
	석사이상	-0.033	-0.142	-0.013	0.054	-0.048	0.098
맞벌이여부		-0.020	-0.135	-0.008	-0.031	-0.036	-0.016
가구소득(자연로그)		0.180 ***	0.295 ***	0.059	0.175 ***	0.172 ***	0.161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142 ***	-0.003	-0.219 **	-0.223 ***	-0.118 ***	-0.115 **
	3명이상	-0.254 ***	-0.122	-0.479 ***	-0.285 ***	-0.261 ***	-0.191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661 ***	0.552 ***	0.602 ***	0.709 ***	0.636 ***	0.577 ***
	3명이상	1.240 ***	1.194 ***	1.492 ***	1.132 ***	1.202 ***	1.063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27	-0.263 **	-0.005	0.090	-0.026	-0.056
	중소도시	-0.073	-0.163	-0.070	-0.039	-0.077 *	-0.013
상수항		1.524 ***	0.304	2.065 ***	1.550 ***	2.037 ***	2.410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6〉 영유아 피복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피복비(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099	0.009	0.129	0.215***	0.142	-0.023
	40대이상	0.078	-0.155	0.092	0.220***	0.106	-0.049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77	0.009	0.051	0.111***	0.043	0.031
	대졸	0.009	0.000	0.096	0.050	0.010	-0.003
	석사이상	-0.095	-0.719**	-0.123	0.052	-0.104	0.003
맞벌이여부		-0.068*	-0.066	-0.088*	-0.044	0.000	-0.046*
가구소득(자연로그)		0.408***	0.479***	0.443***	0.288***	0.312***	0.218***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227***	-0.197	-0.296***	-0.112***	-0.379***	-0.080**
	3명이상	-0.458***	-0.923***	-0.595***	-0.339***	-0.459***	-0.110**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584***	0.506***	0.586***	0.576***	0.686***	0.647***
	3명이상	0.817***	0.272	0.837***	0.949***	0.887***	0.602***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32	0.012	-0.021	-0.001	0.057	0.040
	중소도시	-0.109**	-0.319*	-0.202***	-0.089**	-0.01	0.025
상수항		-0.702**	-1.656*	-1.187***	-0.122	0.247	1.14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7〉 영유아 문화생활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문화생활비 (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246**	0.291	0.361**	0.236**	0.062	0.193
	40대이상	0.280**	0.352	0.396**	0.278**	0.048	0.171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169***	0.544***	0.147	0.038	0.115*	0.124
	대졸	0.222***	0.656***	0.242***	0.136**	0.159***	0.165**
	석사이상	0.176	0.613**	0.044	0.152	0.145	0.111
맞벌이여부		-0.029	-0.087	-0.071	-0.031	0.009	0.037
가구소득(자연로그)		0.680***	0.747***	0.750***	0.699***	0.594***	0.575***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314***	-0.267*	-0.260***	-0.305***	-0.322***	-0.431***
	3명이상	-0.643***	-0.771***	-0.747***	-0.643***	-0.498***	-0.622***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571***	0.492***	0.632***	0.612***	0.561***	0.527***
	3명이상	0.774***	0.544	1.020***	0.848***	0.737***	0.804***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37	0.067	0.089	-0.003	-0.056	0.01
	중소도시	-0.054	-0.215	-0.107	-0.069	-0.005	0.093
상수항		-2.006***	-3.696***	-2.927***	-1.947***	-0.750**	-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표 IV-2-8〉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결과들과는 달리, 저분위(10%분위)와 고분위(90%분위)의 추정결과가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분위와 고분위에 대한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분위(25%분위, 50%분위, 75%분위)에 대한 결과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구소득탄력성이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5%분위에서 영유아 보건의료비의 가구소득탄력성은 0.039 수준으로,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비는 약 0.04% 정도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그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75%분위에서는 가구소득탄력성이 0.196 수준으로 추정된 바, 가구소득이 1% 증가할 경우 영유아 보건의료비는 약 0.2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8〉 영유아 보건의료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보건의료비 (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069	-0.405 **	-0.101	-0.091	-0.074	0.000
	40대이상	-0.100	-0.405 **	-0.265	-0.136	-0.074	0.000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18	0.000	0.036	0.050	0.000	0.000
	대졸	-0.001	0.000	0.078	0.000	0.000	0.000
	석사이상	-0.017	0.000	0.118	-0.016	-0.003	0.318 *
맞벌이여부		0.004	0.000	0.046	-0.027	-0.065	0.000
가구소득(자연로그)		0.146 ***	0.000	0.039	0.186 ***	0.196 ***	0.000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219 ***	0.000	-0.155 *	-0.235 ***	-0.376 ***	-0.288 ***
	3명이상	-0.333 ***	0.000	-0.285 **	-0.393 ***	-0.419 ***	-0.288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510 ***	0.000	0.463 ***	0.584 ***	0.616 ***	0.606 ***
	3명이상	0.747 ***	0.000	0.737 ***	0.781 ***	0.953 ***	0.981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27	0.693 ***	0.011	-0.068	-0.075	0.000
	중소도시	-0.214 ***	0.000	-0.226 **	-0.220 ***	-0.089	0.000
상수항		0.556 **	0.405	0.799	0.396	0.738 **	2.079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마지막으로 〈표 IV-2-9〉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액에 따른 분위별 가구소득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비목별 지출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분위별 결과가

일정한 경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저분위(25%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이 1.049(가구소득 1% 증가시 영유아 교육보육비 1.05% 증가) 수준으로 가장 크게 추정된 반면, 저분위(10%분위)에서 0.527(가구소득 1% 증가시 영유아 교육보육비 0.53% 증가) 수준으로 가장 작은 가구소득탄력성이 추정되었다. 중분위 이상 수준에서는 가구소득탄력성이 약 0.64~0.68 수준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지출액 수준이 적었던 가구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아마도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일정 수준 누리고 싶은 부모들, 또는 사회적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9〉 영유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교육보육비 (자연로그)		OLS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788 ***	0.194	1.166 ***	0.942 ***	0.710 ***	0.600 ***
	40대이상	1.102 ***	0.632 *	1.726 ***	1.125 ***	0.790 ***	0.673 ***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42	0.044	-0.093	-0.054	-0.071	-0.011
	대졸	-0.060	0.058	-0.096	-0.104	-0.062	0.057
	석사이상	-0.081	0.478	-0.273	-0.482 ***	0.005	0.130
맞벌이여부		0.140 **	-0.078	0.147	0.231 ***	0.127 **	0.106
가구소득(자연로그)		0.780 ***	0.527 ***	1.049 ***	0.656 ***	0.680 ***	0.643 ***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085	0.017	0.148	-0.174 **	-0.269 ***	-0.307 ***
	3명이상	-0.505 ***	-0.299	-0.647 **	-0.523 ***	-0.631 ***	-0.614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811 ***	1.701 ***	0.849 ***	0.690 ***	0.613 ***	0.582 ***
	3명이상	1.567 ***	2.573 ***	2.113 ***	1.400 ***	1.365 ***	1.191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218 **	0.096	0.041	0.222 **	0.314 ***	0.475 ***
	중소도시	0.108	0.092	-0.011	0.106	0.222 ***	0.290 ***
상수항		-3.143 ***	-3.387 ***	-5.859 ***	-2.150 ***	-1.425 ***	-0.77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지금까지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양육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위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양육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가구소득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가구소득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의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상

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의 양육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소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양육비용 지출 비목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식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양육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가구소득탄력성이 지출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가 해당 비목들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보건의료비와 교육보육비 항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탄력성도 증가하는 바, 해당 지출에 대한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보건의료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양육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고소득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3.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격차와 소득탄력성

앞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지출 불평등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가중되고 있음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구소득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가구소득탄력성을 추정해보았다. <표 IV-3-1>은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 표본을 가구소득별로 계층을 구분하여 가구소득 하위10%, 하위25%, 하위50%, 상위50%, 상위25%, 상위10%에 해당하는 표본에서의 가구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것이다. 추정결과, 하위10%와 상위10% 표본분석을 제외하고 모두 가구소득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앞선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소득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의 양육비용을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1% 증가했을 때, 가구소득 하위25%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영유아 양육비용을 평균적으로 약 0.2% 정도 증가시키는 반면, 가구소득 상위25%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0.6% 정도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소득 가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지출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IV-3-1〉 가구소득 계층별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최소자승 추정결과

종속변수: 영유아 양육비용용 (자연로그)		하위10%	하위25%	하위50%	상위50%	상위25%	상위10%
모 연령 (기준:20대)	30대	-0.024	-0.046	0.116	0.351 ***	0.786 ***	(base)
	40대이상	-0.067	0.027	0.160 **	0.447 ***	0.788 ***	-0.033
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182 *	0.113 *	0.076 *	0.003	-0.106	-0.003
	대졸	0.102	0.112 *	0.063	0.051	-0.026	-0.023
	석사이상	-0.081	0.202	0.114	-0.038	-0.102	0.059
맞벌이여부		0.092	0.033	0.004	0.015	0.030	0.153
가구소득(자연로그)		-0.059	0.188 **	0.397 ***	0.449 ***	0.579 ***	0.292
총 자녀수 (기준: 1명)	2명	-0.228 *	-0.211 ***	-0.254 ***	-0.305 ***	-0.291 ***	-0.220 *
	3명이상	-0.502 ***	-0.453 ***	-0.440 ***	-0.618 ***	-0.573 ***	-0.667 ***
영유아 자녀수 (기준: 1명)	2명	0.751 ***	0.783 ***	0.734 ***	0.680 ***	0.574 ***	0.470 ***
	3명이상	1.049 ***	1.189 ***	1.158 ***	1.291 ***	1.189 ***	1.009 ***
지역규모 (기준:읍면지역)	대도시	-0.051	-0.044	0.001	0.158 ***	0.196 **	0.235 *
	중소도시	-0.170	-0.151 **	-0.103 **	0.083	0.050	0.016
상수항		4.154 ***	2.874 ***	1.644 ***	1.126 ***	-0.072	2.630 *
표본수		165	410	825	813	38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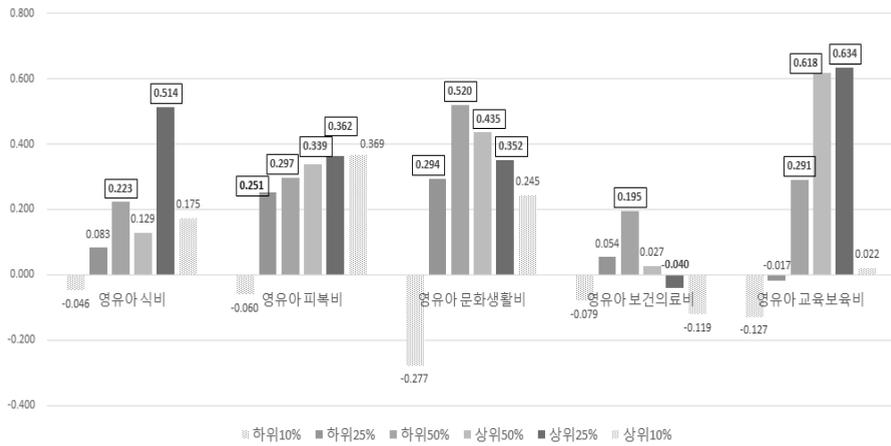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p < .1$ , \*\*  $p < .05$ , \*\*\*  $p < .01$ .

[그림 IV-3-1]은 가구소득 계층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가구소득탄력성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항목의 양육비용에 대해 가구소득 하위10% 집단과 상위10% 집단의 가구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집단 내에서 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을 제외하고 가구소득 하위25%, 하위50%, 상위50%, 상위25%에 해당하는 4개 집단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은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유아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는 가구소득탄력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선 분위회귀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에 대한 지출은 고소득 집단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로 지출하는 반면, 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중위소득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피복비 지출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와 마찬가지로 고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피복비에 대한 지출은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3-1] 가구소득 계층별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가구소득탄력성 추정결과: 비목별 결과



주: 진하고 박스처리 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도) 자료.

## 4. 소결

이 장에서는 1차년도(2018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영유아 양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위회귀분석 및 가구소득 계층별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소득과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의 격차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양육비용이 모든 비목에서 조금씩은 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양육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때 지출 비목별로는 보건의료 및 교육보육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가구소득 계층별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득 가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 자녀의 식비나 피복비 등을 증가시키고, 중위 소득 구간은 문화생활비를 늘리는데 반해, 고위 소득 구간은 교육보육비나 보건의료비 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러한 육아 가구의 성향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보육비나 보건의료비 등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바로 가구소득으로 연결되는 비용 지원 정책의 설계에 있어 동일한 비용의 지원이 고소득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 01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 방향성
- 02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강화
- 03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감안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04 공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 05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재구조화
- 06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 방향성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 정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육아 가구 지원 정책인 이들 정책은 모든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막대한 재정 소요의 증가를 가져왔다(최효미·박은정·김태우 외, 2019<sup>23</sup>).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시로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재원 부담이 2013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2018년도 이후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보편적 육아 지원을 위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편 지원의 급속한 확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에 따르는 재정 압박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양육비용에 무상 보육·유아교육 등 육아 지원 정책이 미친 영향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이 보고된 경우(박미경·조민효, 2014; 서문희·이혜민, 2014; 이채정, 2018)와 부정적 혹은 제한적 영향이 있을 뿐(김은정·이혜숙, 2016;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7: 75~93)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는 향후 저출산 및 육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구

---

23)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발간예정).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성과 분석 연구.

조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1)하는 기본 계획이 제시되었다. 즉, 전반적인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출산율 제고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질적 지표로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육아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는 결국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육비용의 경감이 궁극적으로 육아 가구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대전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들어 아동수당 지원 정책은 기존보다 더욱 확대되고 세제 지원은 축소되는 양상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아 가구들은 여전히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세제 지원에 비해 체감도가 높은 아동수당의 확대를 지지하는 양태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 가구들의 선호와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 변화는 수요자 요구에 매우 부합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 가구들이 선호하는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이 실제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육아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양육비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용도 감소하지 않고 약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sup>24)</sup>. 아동수당이 정책 목표대로 육아 가구의 가구소득 부조의 성격으로 작동했다면,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담은 감소했음을 내포한다. 다만, 가구 생활비 지출액이 지원금 증가액 이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가계부담 경감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의 증가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아닌 가계 지출의 증가를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재정 투입 증가를 고려할 때 이를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좀

24) 1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 생활비 지출액은 311만9천원,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이었으며, 2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 생활비 지출액은 332만6천원, 영유아 양육비용은 92만6천원임.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sup>25)</sup>.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 가구의 보편적 비용 지원에 대한 강한 정책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된 정책의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보편적 비용 지원을 확장해 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확장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바, 단순히 수요자 요구 및 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이나 법제도적인 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방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은 한번 실시되면 제도 변경에 있어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감안한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요컨대, 현재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은 현행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반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비용 지원 정책의 확대의 여파로 자원 투입이 어려워지거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대상 혹은 부문이 없는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육아 지원 정책 설계에 있어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사회적 배려와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강화

### 가. 저소득 육아 가구 기준 상향 조정 필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V-1-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회색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혹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와 교육/보육비 지원 중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을 제외하면, 주로 보건/의료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이때 비목별 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교육/보육비 지원은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보편 지원<sup>26)</sup>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주거비는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

25) 물론 지원금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증가가 기준에는 예산 제약으로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구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출 비목을 기준으로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데, 보건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보편 지원이 섞여 있는 형태를 보였다. 한편, 식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며, 기저귀 지원(개인유지비)과 교통통신비 감면 사업 등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의식주 및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경우 저소득층을 목표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비교적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비목별 및 범주별 주요 지원 정책 정리

비목	지원 정책명	지원 대상	차등 지원 여부
특정 되지 않음	아동수당	만6세 미만 (2019. 1. 1 기준) 만7세 미만 (2019. 9. 1 확대)	차등 없음
	가정양육수당	만0~5세 (84개월미만 미취학)	차등 없음. 연령에 따라 차이 남
교육 보육비	보육료	만0~2세	일반적으로 차등이 없으나, 농어촌, 장애 등 차등
	누리과정	만3~5세	일반적으로 차등이 없으나, 농어촌, 장애 등 차등
	아이돌봄서비스	(생활연령) 만3개월~만12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식비	영양플러스	최저생계비의 200%미만 만6세(72개월) 미만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물품 지원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물품 지원
주거비	공공주택공급	다자녀 가구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다자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보건 의료비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	차등 없으나, 의료서비스 열악 한 지역은 추가지원

2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지원되므로 이를 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비목	지원 정책명	지원 대상	차등 지원 여부	
	요양비(출산비) 지원	자택 출산한 경우	차등 없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만18세 미만, 환아		
	예방접종 지원	만12세 이하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		
	입원진료비 지원	만6세 미만		
		난임 부부 시술지원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등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출산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구	
개인 유지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부모, (0~24개월)	소득수준 및 취약여부에 따라 대상 선별	
	교통 통신비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TV수신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세제 지원	기본 공제 대상 자녀	만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019. 1. 1 기준)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 차등 공제 금액이 동일하여, 고소득층에서 혜택이 큼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출생아 혹은 입양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별	
	자녀 교육비 공제	만18세 미만	차등 없음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6세 이하, 수당 수급자		
	자동차취득세감면	다자녀가구 (18세미만)		자녀수에 따라 대상 선별

주: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연령 기준은 보육연령(자신의 생일을 넘기는 날짜) 기준  
 자료: 1) 최호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58~71.  
 2) 본 연구의 1장 6절 내용 참조.  
 3)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영양플러스,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196&cNttId=69&menuNo=200561> (2019. 10. 30 인출).

그런데, 여기서 주거비 지원의 다수 정책과 이동통신비 감면 등 교통통신비 관련 지원은 비단 육아 가구에 국한한 정책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해당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 인하,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식품지원, 기저귀 지원 및 조제분유 지원, 일부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저소득층이면서 해당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미숙아이거나 난청인 경우,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아이와 같이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로 지원 대상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 가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거비와 같이 일반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정책의 다수가 저소득 가구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 혹은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을 활용하고 있다<sup>27)</sup>. 통상 기초생활대상자 중에는 육아 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sup>28)</sup> 이들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육아 가구도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은 사회 최저층의 가장 취약한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와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다수의 저소득 육아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저소득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육아 지원 정책에 있어 저소득 가구 선별 기준이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 평가를 통한 후속 연구를 요하는 사안이나, 기초생활대상자와 같은 기준보다는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등의 기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준이라 사료된다.

27) 한편, 주거비 감면 정책의 경우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가구소득이 육아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음.

28) 2018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1,165,175가구) 중 자녀 동거 가구는 339,984가구로 29.2%에 그침.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수급자 (1,653,781명) 중 9세 이하 수급자는 86,692명으로 5.2%에 불과함. (통계청 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D.1:D3.2:117\\_11714.3:#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D.1:D3.2:117_11714.3:#SelectStatsBoxDiv), 2019. 10. 30 인출).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3.4%이므로(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9. 10. 30 인출),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육아 가구는 채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나. 자녀 장려금 등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강화

본 연구의 가구소득 계층별 영유아 양육비용 관한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구소득탄력성이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식비와 피복비의 탄력성이 큰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교육보육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즉,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식비 등에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크므로, 결국 보편적 비용 지원의 확대가 교육보육비를 중심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를 더 크게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수당의 활용처를 묻는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재확인되는 바,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지출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소득 가구는 교육/보육비와 저축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중 2019년에 정책 변화가 있는 아동수당과 세제 지원 혜택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정책의 도입은 세제 지원에 비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기존의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을 소득 공제(인적공제<sup>29</sup>), 세액 공제(자녀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 환급형 세액 공제(자녀 장려금)로 구분할 때, 인적소득 공제 제도의 경우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지원 혜택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제도로 언급되고 있다(이상은·정찬미, 2016: 841). 반면, 보편적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인적소득공제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은·정찬미, 2016: 849). 또한, 이상은·정찬미(2016: 849)는 조세 지원 정책 중에서 소득 공제 혹은 비환급형 세액 공제(자녀 세액 공제 등)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 대상이 되므로, 저소득 및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할 경우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기존의 세제 지원 방식에 비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29) 1명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함.

다. 그런데, 2019년 아동수당의 도입 이후 변화된 세제 지원 방식은 인적 공제(소득 공제)는 유지한 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아동수당 수급자인 영유아(만7세미만)를 제외하여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소득세법 제 50조, 제 59조의 2). 환급형 세제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고, 자녀 1인당 30~50만원이던 환급금을 50~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9)<sup>30</sup>. 즉, 2019년도의 아동수당 도입 및 세제 지원 정책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가구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득 공제(인적 공제) 제도가 유지되고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가 부분적이었던 만큼 세제 지원 정책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육아 가구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 즉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 정책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여 공적 이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가구의 취약 여부를 고려하여 아동수당플러스(가칭)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직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 가구의 37.6%가 돌봄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약 가구 중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 최우선한다는 의견을 보이긴 하였으나, 육아 가구의 다수가 아동수당의 보편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나 아동수당 지원 제도는 2018년 도입 당시 소득 상위 1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모든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 바 있어, 다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 정책에 대한 저항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의 확대는 기존 아동수당 제도와는 분리된 별도의 취약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분명한 경계를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직접적인 추가 비용 지원이 정책적 저항에 부딪칠 위험이 높는데 반해, 세제 지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세제 지원

30) 재산 기준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

방식의 변화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직하다. 세제 지원으로 환급 받는 소득과 비용 지원으로 추가 지원 받는 소득 등을 지원 방식과 상관없이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과 상관된 아동급여라고 통칭하여 생각할 경우, 세제 지원 혜택의 확대 또한 아동급여의 상승을 가져와 육아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 기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보편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역진성을 갖는 소득공제(인적 공제)나 고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비환급성 세액공제(자녀 교육비 공제) 등을 축소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제 지원 정책 중 육아 가구의 인지가 높은 제도로 추가 비용 지원에 대한 저항과 유사하게 제도 변경에 대한 저항에 부딪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의 확대는 현행 자녀장려금 제도의 정비와 확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자녀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 3.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감안한 초등학교령기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가.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단계적 검토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한 2012년생 아동들을 추적조사 하였다. 초등학교 진학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활용 실태나 제도 개선 요구 등은 본 연구가 아닌 연구과제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연구에서 주로 다룰 예정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령기로 진학하는 전환기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용과 육아 가구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들 초등 전환기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아기(만6세)에 비해 초등1학년의 양육비용이 약 4만5천원가량 상승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양육비용 지출액이 컸다. 유아기에 비해 초등1학년 자녀들은 다수의 비목에

서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가 및 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통신비 등에서 미묘하게 약간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식비 지출과 교육/보육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비목이었는데, 양육비용 중 비목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식비 비중은 줄어든데 반해 교육보육비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만6세 유아기 자녀의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였으나, 만7세 초등1학년 자녀의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에 달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육아 가구들은 전체 양육비용이 소폭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비목의 지출을 일부 조정하여 교육/보육비로 활용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령기는 의무교육 기간으로 공교육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양육비용의 변화가 초등학교령기에 들어서며 사교육/보육을 위한 지출 비용의 증가에 기인했음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만6세 유아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 중이긴 하나 특히 유치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마다 20만원 내외의 추가 교육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93). 따라서, 초등학교령기 자녀의 양육비용 증가는 주로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출 변화라 볼 수 있다.

한편, 공적 이전 소득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보편적 비용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 보육/유아교육 도입에 따르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뿐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지원 대상을 모두 취학 전 영유아 자녀로 하고 있다<sup>31)</sup>.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금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영유아기에 고정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가정양육수당은 제도의 태동 자체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영유아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반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비용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가구소득 보전 혹은 육아 관련 급여의 성격이 강한 지원금이므로, 제도 도입 당시 지원 대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비용 지원은

31) 아동수당의 경우 2019. 9. 1부터 초등1학년(만7세)로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으나,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실시된 5월-8월 사이에는 제도 도입 전으로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자녀로 국한됨.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제도의 역행이 몹시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지원 체계 내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상 직접적 비용 지원이 육아 가구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장해나가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연령의 모든 가구를 지원함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즉,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면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금 인상이 아닌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확장이 보다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현실적인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급속한 지원 대상의 확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지원 정책의 효과성 또한 모호한 상태에서 지원 대상의 급격한 확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간접적으로 파생되고 육아 가구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등 양육 비용에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등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의 방향 또한 놀이 중심,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83), 학교 뿐 아니라 방과후 시간에 사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초등 저학년에 대한 정부의 육아 지원은 온종일 돌봄교실과 같은 돌봄서비스 지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지원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돌봄 공백과 무관한 방과후 시간에 대한 지원 또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긴 하나 초등 진학을 전후하여 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반해, 외벌이 가구의 경우 오히려 자녀

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육아 가구의 경우에도 방과후 시간을 사교육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 내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볼 직하며, 전반적으로 아동 대상 인프라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진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온종일 돌봄 체계 등에서 포괄되는 방과후 활동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나 교육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제고가 동반될 때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4. 공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을 식비 다음으로 교육/보육비를 위해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차년도 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고 싶다는 영유아 가구들의 선호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42).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가 무상 보육/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제도 설계를 감안할 때, 결국 육아 가구들이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고 싶어 하는 서비스는 사교육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의 선호가 체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층 분석과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에 대한 가구소득 탄력성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매우 큰 특징을 보였으며, 고소득 가구일수록 실제로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 가구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소득 가구들은 예산 제약으로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제약받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처럼 육아 가구들이 사교육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를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감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보육비는 가구 생활비 비목 중 지출 비용 전체가 다른 가구원이 아닌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특징을 보이며, 식비 다음으로 지출액 규모가 큰 비목이다. 즉, 비육아 가구와 비교할 때 육아 가구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 항목이 교육/보육비라 할 수 있다. 이에 무상 보육/교육의 도입과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육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교육/보육비가 가구소득탄력성이 매우 큰 일종의 사치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육아 가구의 소비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 가구들이 무상 혹은 저렴하게 지원되는 보육/교육서비스보다 사교육을 선호하거나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보육/교육서비스가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공백 없는 촘촘한 지원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편의성이 제고되고 촘촘하게 지원 체계가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면 결국 육아 가구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일부 수익자 부담을 허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줄여 양육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일종의 가성비가 높은 우수한 공보육/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장기적으로 사보육/교육서비스를 부추기는 유인 자체가 점차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육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sup>32)</sup>.

32) 단, 구체적인 공보육/교육서비스의 지원 체계 혹은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함. 연구과제2 등에서 초등 돌봄 지원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5.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재구조화

2019년 아동수당이 보편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금성 급여지원으로 성격이 유사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체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각각을 떼어놓고 볼 때 제도 성격이나 정책 목표, 전달 체계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여 통합이 가능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태동 배경을 고려할 때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상적이면서 대체적인 지원금의 성격이 강한 영유아 대상 급여이다. 즉, 아동수당은 모든 육아 가구에 대한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되는 완전한 보편지원이라면, 가정양육수당은 기관 미이용자로 지원 대상이 국한되는 정책이다.

본 연구를 포함한 양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양육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양육비용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제도 설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이 기관 미이용에 따르는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기관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받게 되는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대 아동비가 높은 고연령 유아일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금 수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sup>33)</sup>. 하지만,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가정양육수당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원금의 차등은 당연하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sup>34)</sup>.

이 같은 상황에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의 변

33) 이는 가정 내 양육 혹은 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된 보상체계라는 논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34) 현금성 지원의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함.

경이 함께 논의되자, 논란이 가증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육아 관련 수당의 통합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감안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무상보육/유아교육, 즉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제도 정비 없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국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제도 통합 수준의 제도 변경이 육아 가구의 혼란과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다만, 영아 자녀의 경우 현금 지원금의 규모가 일부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관 이용율이 크게 변동되는 등의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후속 출산 가능성이 높은 가구이고, 영아기 가정 내 양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관 지원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행 지원수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때 만약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을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행 비용 지원 체계를 지금과 같이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가정양육수당의 수준을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육아 가구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가정양육수당이 훨씬 선호할만한 지원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혹은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출 경우 지원 체계는 보육수당(가칭)으로 일원화가 가능하며, 아동수당과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아동수당 체계로의 정비 또한 가능하다고 보인다<sup>35)</sup>.

하지만, 이와 같은 일원화된 아동수당 체계로의 정비는 육아 가구의 만족도는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재정 효율성이나 정책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의 확대보다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가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제도 변경의 기준이라 판단된다.

35) 단, 이는 명목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의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초중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에 가까운 무상보육/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기관 지원금의 증액이 요구되는 사안임.

## 6.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육아 가구들은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직접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높은 반면, 세제 지원 정책이나 지원 대상이 특정되는 정책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를 보였다<sup>36)</sup>.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가 되고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인지도 자체가 높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이 단순히 본인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 요구 혹은 여론에 떠밀려 제도가 변경 시행되다보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의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육아 가구에 대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와 더불어, 전반적인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와 체감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세제 정책을 통한 육아 가구의 형평성 제고 등이 적극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나 복지포(<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사이트 등을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검색 가능하고 유관 신청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복지포 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 운영 중에 있다(복지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2019. 11. 2 인출).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아가 있는 육아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및 다자녀 가구 혜택, 출산 지원 혜택 뿐 아니라 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4. 26 보도자료).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육아 가구들은 일일이 자신이

36) 아동수당과 세제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는 본 보고서를, 기타 육아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는 1차년도 연구 즉,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필요한 정책을 사이트별로 검색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전달체계에 관한 안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민원 신청 시스템이다 보니 출생아 위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 기 출산한 육아 가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육아 가구들은 아동수당 지원 제도를 뉴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접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웃이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알았다는 것이 다음이었다. 공공기관의 공고문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인지하였다는 육아 가구의 비중은 10%내외로, 최근의 정책 분야 뿐 아니라 다수의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경로로 정책을 인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합 정보 시스템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언론 매체나 지인을 통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을 통해 접하기 용이한 정보이므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전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기획재정부(2019. 7. 25). 2019년 세법개정안.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김태완(2017).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보건복지포럼(2017.6), 85~96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미경·조민호(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b). 아동수당 사업 안내 2018.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은·정찬미(2016).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827~850.
- 이채정(2017. 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이채정(2018).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2). 109~13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1. 31),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 제 13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자료집.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 (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발간예정).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세상, <https://blog.naver.com/ntscafe/221534002089>, (2019. 5. 13 인출).
- 네이버 포스트(국세청 홍보과), 누리우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70432&memberNo=4795084&vType=VERTICAL>, (2019. 5. 13 인출).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 ep.do>, (2019. 11. 2 인출).
- 복지로, 보육료 지원,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9. 5. 13 인출).
- 복지로,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9. 5. 13 인출).
-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9. 5. 13 인출).
-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5. 13 인출).
- 여성가족부 맞춤형서비스 홈페이지, 일·생활균형 수혜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tSn=326](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tSn=326) (2019. 6.10 인출).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9. 5. 13 인출).
-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2019. 11. 2 인출)
- 통계청 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D.1;D3.2;117\\_11714.3:#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D.1;D3.2;117_11714.3:#SelectStatsBoxDiv), (2019. 10. 30 인출).
-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9. 10. 30 인출)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영양플러스,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196&cNttId=69&menuNo=200561>, (2019. 10. 30 인출).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4. 26). 보도자료,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 뉴시스 보도내용(2018. 10.10일자), 여야 아동수당 ‘갑론을박’...“행정비용 1626억”vs“터무니없어”, (2019. 6. 10 인출).
- 매일경제(2018. 10. 20) 보도내용, 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형희...법жат대 위화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54499/>, (2019. 6.10 인출).
- 보건복지부(2019.1.14.) 보도자료,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6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64), (2019. 6.10 인출).
- 서울경제(2018. 12. 12 보도내용), 연 10조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통합합 추진, [https://m.sedaily.com/NewsVlew/1S8FQWT9NS#\\_enliple](https://m.sedaily.com/NewsVlew/1S8FQWT9NS#_enliple), (2019. 6. 10 인출).

〈법령〉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 소득) 3호 마, 3호 머

소득세법 제 50조

소득세법 제 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7~제 100조의 31

※ 부록에 제시된 참고문헌을 포함하며, 부록에는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을 표기하지 않음.



# A Study on the Spending and Childrearing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I)

Hyo Mi Choi · Hye Won Jang · Tae Woo Kim · Young Woo Koh

This study represents the second wave of a 5-year research project on the spending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cluding those on childrearing costs. In the present 2nd wave of the study, we looked at changes in the spending behavior of childrearing households attributable to the childcare allowance policy, which was introduced in late 2018 and subsequently expanded. We also gauged the views held by childrearing households regarding the policy shifts. Furthermore, by tracking the original sample collected in the 1st wave of the study, we measured the changes in childrearing costs as the children entered the first year of elementary school. Additionally, using data from the 1st wave of the study, we also conducted in-depth analysis of gaps in childrearing costs across different household income levels.

To these end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review, the KICCE Spending Survey on childrearing households, in-depth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st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as well as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findings regarding the spending by childrearing households in 2019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living expens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creased moderately from 3,119,000 KRW in the 1st wave to 3,326,000 KRW in the 2nd wave (2019). Secondly, there was also an increase in average monthly total childrearing costs, equal to 1,265,000 KRW as of the 2nd wave.

Childrearing costs for young children equalled 926,000 KRW, and childrearing costs per young child equalled 660,000 KRW. Of the total childrearing costs, childrearing costs on young children, and childrearing costs per young child, the item that saw the highest expenditure was 'education / childcare', followed by 'food expenses' and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Thirdly, compared to the 1st wave, the level and compositional share of childrearing costs for children transitioning to elementary education increased somewhat. For children transitioning to elementary education (born in 2012), the most important expenditure sub-item was 'education / childcare', followed by 'food expenses (including dining out)',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entertainment costs)', 'insurance contributions', and 'clothing (including shoes)'. Fourthly, when asked about which expenditure sub-item they would prioritize in spending more if they were to have additional income, the greatest number of households chose 'education / childcare' costs (25.6% of respondent households), followed by 'financial investments' (25%), 'debt payments' (17.6%),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15.9%), and lastly, 'food expenses' (7.2%)

Regarding the major policy shift concurrent to the 2nd wave of the study - the expansion of assistance in the form of childcare allowances and tax benefits - the views expressed by childrearing households were as follows. Firstly, among recipients of childcare allowances, the greatest number of households spent the allowances on 'food expenses' (29.0%), followed by 'education / childcare' (24.1%), and 'savings and financial investments' (21.3%). How childcare allowances were spent varied substantially depending on household income levels. Among households with less than 3 mil. KRW in incom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spending was 'food' (45.0%), which was vastly higher compared to the next-important item (13.2%). Secondly, regarding the policy direction that childcare allowances should take, most respondents (58.4%) felt that current levels were suitable, while 39.1% of respondents called for expanded assistance and only 2.5% of respondents felt that cuts in assistance were needed. Thirdly, on the issue of graduating

assistance levels depending on disadvantages regarding childrearing, 37.6% of respondents felt that assistance levels should be graduated. Regarding graduated assistanc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60.7%) felt that low-income households needed additional support, followed by single-parent households (16.2%),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11.9%), and households where grandparents were the sole guardians (10.5%). Fourthly, only 22.0%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changes in the tax code preventing the repeated receipt of child tax credits in cases where childcare allowances were already being provided for children of age 6 or less (born in 2013 or later). Fifthly, regarding the currently existing assistance policies that were most helpful for alleviating childrearing costs, households responded that childrearing cost assistance (1st) and assistance for early education costs (2nd), which had a combined share of 66.2%, were the most helpful, followed by childcare allowances (51.2%).

For the present 2nd wave of the study, we utilized the data from the 1st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how childrearing costs varied depending on household income levels. Firstly, looking at total (average) childrearing costs across household income quantiles adjusted for the number of children, the number of children and higher household income were clearly associated with higher spending on childrearing costs. Secondly,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showed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total spending on living expenses was positive across all quantiles. Thirdly, analysis for each expenditure item showed that, in the case of items such as food, clothing, and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higher expenditure levels tended to be associated with an overall decrease in the elasticity of childrearing cost expenditure relative to household inco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tems such as medical / healthcare costs or education / childcare costs, higher expenditure level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household income elasticity, suggesting that there was a furthering of inequality regarding expenditure on these items. Fourth, conducting analysis by categorizing households into the lower 25%,

lower 50%, higher 50%, and higher 25% percentiles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household income elastic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ome levels. Therefore, this suggested that gaps in childrearing spending for young children tended to widen along with parents' income levels. Also, the household income elasticity of spending on education / child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was found to increase among higher-income households, while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he case of spending on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n this study we set for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ly, although there exists a strong policy demand for universal cost assistance for childrearing households, 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regarding the matter of expanding universal assistance until evidence on the efficacy of consistent policy becomes better-established.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social fairness, upward adjustments should be made on the eligi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 childrearing assistance. Also,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fund-type programs such as child tax credits. Thirdl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gradually broadening the range of eligible ages for childcare allowances. Additionally, in order to alleviate the education / childcare cost burden fo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there is a need to support after-school programs that utilize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Fourth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 childcare services. Fifthly, there should be a prudent restructuring of the cost assistance system for childrearing households. Finally,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boost the visibility of the relevant policies.

Keyword: cost burden of childrearing households, childrearing costs for children transitioning to elementary education, alleviation of childrearing cost burden, assistance policies for low-income childrearing households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173

ISBN 979-11-90485-17-3